

# 美國의 農・水協發達過程과 組織運營의 特徵에 관하여

A Study on the Agricultural and Fisheries Cooperatives in America.

崔 正 銳

Jeang-Yeun Choi

차 례

## 緒 言

- I. 協同組合的 團體의 起源과  
    美國의 協同組合成立
- 1. 協同組合的 團體의 起源
- 2. 美國의 協同組合成立
- II. 農協의 發展과 그 機能
- 1. 「그레이즈」運動
- 2. 農協의 發展

- 3. 農協의 形態와 機能
- 4. 美國人の 協同組合活動과 農協의 現況
- III. 水產業의 現況과 水產業協同組合
- 1. 美國水產業의 現況
- 2. 水協의 成立과 現況
- 3. 水協의 機能
- 4. 水產金融制度
- IV. 農水協組織運營의 特徵
- 結 言

## 緒 言

오늘날 世界各國은 先進國이던 開發途上國이던 간에 協同組合運動을 한층 더 廣範圍하게 展開시키고 있다. 落後된 產業의 發達과 農漁村地域의 經濟的近代化를 위해서, 或은 資本主義經濟의 持續的發展을 維持하기 위하여 이를 政策的 次元에서 直接 間接으로 支援育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資本主義의 歷史的產物인 이 協同組合은 한마디로 資本主義라고 하는 巨木아래에서 誕生되었고, 그것이 非資本主義의 小生產者 내지 消費者들의 自衛組織이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어느 社會의 協同組合이나 다를 바 없다고 보겠지만 결국 그것을 發生시킨 各國資本主義經濟의 成立背景과 內容 및 構造에 따라 協同組合은 그의 性格및 形態 그리고 發達過程을 각각 달리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事實을 우리는 英國과 「프랑스」 및 獨일의 協同組合運動의 差異에서 볼 수 있고 또한 우리나라를 비롯한 亞細亞諸國의 協同組合制度에서도 各己 다른 特質을 充分히 把握할 수 있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今世紀 最大의 經濟的發展과 繁榮을 누리고 있는 美國에 있어서 協同組合의 成立과 發達過程을 살펴봄으로써 美國의 土壤 위에 成立發達하여 온 資本主義의 特質에 따라 그의 協同組合에 관한 類型의 特徵的一面을 밝혀 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리하여 이를 特히 美國의 農・水協을 中心으로 考察코자 하는 것이다.

## 수 산 경 영 론 집

### 1. 協同組合的 團體의 起源과 美國의 協同組合 成立

#### 1. 協同組合的 團體의 起源

近代的 意味에서의 協同組合(cooperative)은 資本主義經濟의 成立發展과 더불어 出發하였으며 또 한 그의 所產으로 보고 있는 現在까지의 見解에 대하여서는 異論이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은 協同組合도 結局은 個個人의 能力에 限界가 있다고 느끼는 人間들의 智慧와 友愛精神에 바탕을 두고 일어난 相互協同(mutual cooperation)의 한 形態라고 하는 점에서 비록 오늘날 各個別 經濟의 經濟的利益을 中心으로 하여 組織되는 資本主義經濟下의 協同組合과는 그 概念은 달리하고 있는 것이지마는 協同組合이 相互協同에 의한 形態라고 하는 점에서 古代人們의 協同組合的 形態(type of cooperative in ancient)는 어떠하였는가를 간단히 살펴보면서 이것을 相互比較코자 한다.

##### 1) 古代의 協同組合的形態

人間이 衣食生活을 함께 있어서 必要한 組織的 團體活動으로서의 協同組合에 類似한 形態(quasi-cooperative structures)의 起源은 人類의 歷史와 함께 오래된다고 할 수 있다.

中世「길드」와 같은 同業者團體의 起源은 멀리 古代「에집트」時代부터 있었다고 하며<sup>1)</sup> 紀元前 3,000년경 古代「바빌로니아」國에서 採用되고 있었던 貸借農業(agricultural leases)과 紀元前 200년경 古代中國의 貯蓄貸付組合은 그들의 運營方式과 組織形態가 마치 近代的 生產組合이나 信用組合과 類似한 점이 많았다고 전한다. 즉 「바빌로니아」의 「하무라비」法典(Code of Hammurapi)이 “借地農場은 共同으로 運營하고 生產物은 個別構成員인 農民의 勞力에 따라 分配해야 한다”고 規定하고 있는 点에서 볼 때 그것은 生產協同組合의 農場運營方式과 分配制度의一面을 엿보이고 있는 것이다.<sup>2)</sup>

한편 古代 中國의 貸付組合은 마치 오늘날 農漁村地域에 發達하고 있는 小規模相互金融組合과 같이 共同의 費用으로 駐出된 基金을 가지고 村落員相互間의 資金需要를 解決하여 주었고 利息으로 생긴 收益은 一定比率에 따라 分配하거나 或은 다시 基金에 充當하였다한다. 그리고 組合의 運營은 持分에 따라 行使되는 投票權에 의하여支配되고 있었다. 이것은 事實上 모든 村落員은 均等한 持分을 所有하고 있었기 때문에 實際로 組合은 各者의 平等한 投票權에 의해 民主的運營方式을 取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sup>3)</sup>

또한 「로마」에서도 이와 비슷한 團體가 組織되어 있었다. 「코레지아」(collegia)라고 하는 同業者團體가 바로 그것이며 이는 어느정도 發展된 同業者組合의 形態를 取하였다는 것

1) Ewell P. Roy, Cooperatives, Illinois, 1964, p. 41.

2) Ibid., p. 41.

3) Ibid., pp. 44~45.

### 美國의 農・水協發達過程과 組織運營의 特徵에 관하여

이다. 즉 「로마」 12 條文法의 保護下에 신발製造業者들을 비롯하여 8개의 工業者團體로 組織된 이 「코레지아」는 그들의 生產과 價格 및 勞動問題등을 解決하기 위하여 共同努力을 하였으며 때로는 帝政「로마」의 機關들과도 對抗하였다고 한다.<sup>4)</sup> 소위 事業協同組合 또는 中小企業協同組合과 같은 形態를 取하고 있었던 團體였다고 볼 수 있다.

#### 2) 中世의 協同組合의 形態

中世紀에 있었던 「길드」制度는 그의 組織目的과 機能 그리고 組織의 動機가 自發的이었다는 점에서 協同組合과 類似한 점을 指摘하고 있다<sup>5)</sup> 11世紀경 中世 都市의 成立과 더불어 出現한 이 「길드」는 16世紀까지 中世 都市의 商工業을 支配한 同業者團體로서 同業者 스스로 相互競爭을 排除하고 利益을 伸張시키기 위하여 自發的으로 組織된 것이다. 後에 領主로부터 承認(charter)을 얻음으로써 合法的인 團體로 까지 發展을 보였는데 그들은 團體組織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어떤 共同体의 規約까지 制定하고 이 規約밑에서 「共同去來制」와 「公正價格의 實施」라고 하는 原則을 相互準守하면서 행한 機能은 다음과 같다.<sup>6)</sup>

#### 中世「길드」의 機能

對內的機能	對外的機能	社會的機能
a. 加入職種의 制限 b. 從業員數의 制限 c. 生產量의 制限 e. 原料獨占의 禁止 f. 投賣行爲의 禁止 g. 顧客爭奪의 禁止	a. 營業의 獨占 b. 非加入者의 排除 (自由商工業者) c. 特權階級에 抗拒	a. 相互扶助 b. 災難時援助 c. 社會保險實施

여기에서 이 「길드」制度가 内包하고 있는 協同組合과 類似한 점들을 다시 要約하여 보면 첫째 同業者相互間의 共同目的과 相互扶助를 위하여 自發的으로 組織하였다고 하는 점, 둘째 組織의 一次的目的을 經濟的利益의 追求에 두고 있었던 점, 셋째 組織의 利用은 各成員間의 機會均等의 原則에 準하였던 점, 넷째 相互援助 등의 社會的機能까지 가지고 있었던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相互扶助的精神에 基盤을 두고 人間의 生活問題 解決과 그 隘路를 打開하기 위한 手段으로서 組織된 協同組合의 形態는 資本主義經濟成立 以前에도 여러가지의 目的과 形態로 存在하여 왔던 것만은 事實이다. 따라서 이를 團體들은 後日에 「길드」組織 또는 生產者協同組合의 成立에 直接 間接으로 影響을 미쳤다고 보는 見解가 있는 것이며 그 代表

4) Ibid., p. 45.

5) Ibid., p. 49.

6) 金玉根著, 經濟史概論, 銀雪出版社, pp. 139~140 參照.

## 수 산 경 영 론 집

的인例로서 비록根據는 稀溥하지마는 「로마」의 「코레지아」가 中世「길드」의 하나인「忿  
孚特」(zunft)의 成立에 影響을 끼쳤을 것으로 보는 見解와<sup>7)</sup>, 現存하는 「스위스」의 農業協  
同組合 가운데 酪農業者協同組合의 어떤 것은 이미 中世의 農業者團體를 그前身으로하여  
發展해 왔다는 記錄이 있다<sup>8)</sup>.

이와 같은 점으로 미루어 보아 中世「길드」는 近代協同組合成立을 促進시켰다고 보고  
있으며 또한 「W. 해리」(Wergandt Harry)도 資本主義 以前의 이와 같은 諸形態의 協同  
組合의 團體들을 「事業에 있어서 相互協同의 方法(Use of Mutual and Coop Techniques)」에  
의한 協同組合과 크게 다를바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sup>9)</sup>.

그러나 土地와 그 밖에 모든 生產手段 一切을 集團的 所有하에 두고 가장 本能的으로 人  
間들이 結合되어 集團社會를 構成하고 있었던 古代 原始共同體의 協同作業과, 그리고 어느  
정도 社會的分業과 交換이 행하여져 商品經濟의 胎動을 보이기始作하였다고는 하나 이미  
그 社會를支配하고 있었던 社會制度가 奴隸制였던 것이므로 農民과 職人們은 어떠한 形態  
에서든 農奴 또는 生產奴隸的 身分과 緊繩에서 벗어 날 수 없었던 「로마」시대의 同業者組  
合등을 協同組合으로 볼수는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中世「길드」組織 역시 그것이 비록  
經濟的 動機에서 自發的으로 成立되었고 機能의 發揮와 原則의 採擇 등 몇가지 점에서 오  
늘의 協同組合과 類似한一面이 엿보이고 있다 하더라도 封建社會의 모든 經濟가 封建領主  
의 謙屬下에 있었다는 점과, 「길드」成員 自體가當時 社會의 上層階級에 屬하고 있었던 점,  
「길드」成立의 契機가 어떤 相對的 經濟制度의 矛循에서 出發한 것이 아니라는 것등에서 오  
늘의 단순한 同業者組織에 不過한 團體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2. 美國의 協同組合 成立

歷史學者 Bucher는 15世紀 「콜럼부스」의 美大陸發見을 人類歷史의 大「드라마」라 하였다.  
그는 人類文化의 歷史는 人間이 自然을支配하고 自然이 人間을 驯化시켜온 마치 大  
河小說과도 같은 것이며 이러한 歷史의 大 드라마는 바로 中世人들의 美大陸發見에서 부터  
始作하였다고 그 의의를 강조하고 있다.<sup>10)</sup> 確實히 오늘날 美國의 劍期의인 經濟發展과  
繁榮이야 말로 括目할 정도이며 經濟·科學 거의 모든 分野에 걸쳐 世界諸國을 先導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數千年 내지 數百年의 歷史的 傳統과 文化的 遺產위에서 社會發展을 거듭하여 온 西歐  
諸國의 成長을 훨씬 앞지르고 있는 美國의 急進의인 成長과 發展은 Buchr의 말을 새삼  
引用할 필요도 없이 人間이 自然을支配하고 自然이 人間을 驯化시켜온 작은 「人間의 威

7) 前揭書,

8) Ewell p. Roy, op. cit., p. 49.

9) Ibid.

10) Harold U. Faulkner, American Political and Social History, New York, 1965, p. 7~9.

### 美國의 農・水協發達過程과 組織運營의 特徵에 관하여

力이 「勝利한 結果」임을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의 歷史的 教訓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것은 人類歷史의 새로운 創造에 比諭하여 말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美國의 歷史는 1492年「콜럼보스」(Christoph Columbus)의 大西洋航海에서 부터 始作되었으며 「스페인」「풀투칼」「프랑스」英國 등 中世重商主義의 諸國들에 의한 約300년간의 植民地收奪過程을 거쳐 1776年의 獨立을 맞이하면서 부터 政治的 및 經濟的 自立基盤을 構築하게 되었다. 그러나 오늘과 같은 美國 資本主義經濟發展의 基礎는 南北戰爭(1861~1865)에 의한 北部 產業資本의 南部 商業資本에 대한 制霸가 確立되면서부터이며 또한 이 時期는 1830年代에 美國이 初期產業革命을 거쳐 第二次 本格的인 產業革命을 進行 시키고 있었던 時期였다.

英國은 1700年代 「프랑스」가 1830年代 「독일」이 1840年代에 각各 急進的인 產業革命을 맞이하여 資本主義 經濟發達의 基礎를 確立하고 있었던 것이다. 美國은 이들 西歐諸國보다 훨씬 늦게 產業革命을 일으켰던것이 지마는 豐富한 自然資源과 廣大한 土地 그리고 封建社會의 저항없이 近代市民社會로 發展될 수 있었던 社會의制度 이와 같은 具備條件으로 말미암아 急進的인 資本主義發展을 거듭할 수 있었던 것이다. 19世紀末에 이미 中小企業들은 大部分 没落하고 그와 더불어 資本의 集中 및 有機的構成의 高度化에 의한 巨大企業이 出現하는 등 獨占段階에 접어 들고 있었다.

이러한 資本主義成立의 歷史와 發展背景을 가진 美國에 있어서 協同組合은 成立 및 이의 發達過程에 있어서 取한 組織形態와 그 機能이 美國資本主義의 그것에 의해 特殊性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다음에 이를 詳述하게 되지마는 美國에 있어서 近代的 協同組合運動은 美國의 資本主義成立과 때를 같이하여 비교적 늦게 出發하였으며 產業革命初期(1830年代)에도 特記할 정도의 組合運動은 보이지 않았다. 18世紀 「메뉴어파쳐」段階에서도 美國의 職人, 勞動者들은 大體로 豐富한 賃金을 받고 있었으며 西部開拓으로 擴張된 領土는 自營農民에게 넓은 農土를 保障할 수 있었다. 그리고 美國資本主義初期에 있어서 美國의 勞動者 農民들은 自由로운 土地를 찾거나 無限한 可能性이 있는 事業을 探求하여 떠도는 半遊牧的生活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소한 節約과 資本家에 대한 對抗을 目的으로 하는 그와 같은 經濟的 組織의 必要性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sup>11)</sup>

그리므로 美國 產業資本主義確立期인 1860年 以前의 群小 協同組合的團體들의 組合運動은 未弱하였으며 그 以後에 急進의으로 發達한 資本主義經濟와 더불어 비로소 많은 協同組合들이 發生하고 組合運動이 本格的으로 展開되었다. 따라서 商業的大農의 基盤위에서 農業의 資本主義化가 促進된 農業部門에서의 組合運動은 必然的으로 農產物의 流通過程을 掌

11) Florence Peterson, American Labour Unions, (吳炳憲 譯, 美國勞動組合研究, 首都文化社), 1951, p. 22.

## 수 산 경 영 론 집

握하기 위한 販賣農協中心으로 처음부터 出發하게된 것이다. 이것이 協同組合發展의 美國的 特徵이라고 할 수 있으며 小規模의 消費. 信用 生產協同組合으로 처음부터 形成發達하여 온 다른 나라들의 協同組合과 비교되는 점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 1) 初期協同組合의 發生

前述한 內容을 土台로 美國의 協同組合運動과 그 發達過程을 段階別로 區分하여 보면 萌芽的 初期段階와 近代的協同組合 成立期로 우선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러면 다음 <表.1>의 美國協同組合發達年表를 參考하면서 이를 좀더 具體的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이 表에서 보면 最初 美國의 協同組合團體는 1752年 「벤자민 프랭크린」(Bengamin Franklin)이 「파라델피아」에서 세운 相互共濟協同組合 (Mutual Insurance Cooperative)이다. 이것을 美國協同組合의 原始로 보는 것은 후에 이 團體가 「롯취엘」方式의 運營原則을 採擇하여 發展하였으며 또한 美國의 現存組合 가운데 가장 오랜 歷史를 가지고 있는해서 그렇게 보고 있다<sup>12)</sup>. 이 團體는 당시 不意의 災難에 對備할 目的으로 가난한 주위의 이웃과 서로 合心하여 스스로 돋자는 保險, 金融會社의 創設을 맞이하고 있었던 時期에 일어난 것<sup>13)</sup>으로서 이를 契機로 1794年에는 「발 티모어」와 「메린랜드」에서도 中小企業協同組合의 일종인 製靴工場協同組合이 建設되었으며, 1810年에는 「코네티 가트」州와 「뉴욕」에서도 2개의 農民酪農業協同組合이 設立되었다.

消費者協同組合의 起源은 1840年 「보스頓」의 裁縫師 「크럽」이 團體購買活動을 위하여 세운 協同商店에서 비롯되어, 「롯취엘」型 消費組合이 美國에 처음으로 紹介된 것은 1863년이다.<sup>14)</sup> 「스미스」(Augustus H. Amith)는 「美國의 協同組合에 대한 歷史는 구구하나 近代的協同組合成立은 이 「보스頓」의 協同商店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英國의 移民들에 의하여 傳來되었다는 것이며, 그는 英國의 오웬니즘(oweenism)이 최초로 美國에 流入된 때가 1824年이므로 이 때 비로소 初期 「롯취엘」方式의 近代的組合運動이 美國社會에 爽트기 始作하였다는 것이다.<sup>15)</sup> 그러나 1824年 「오웬」(Robert Oween)과 그의 主義者 「카베트」(Etine Cabet) 및 「코레이지」(Samuel T. Coledrige) 등이 「아이오와」「인디아나」江邊에서 理想的 平等社會建設을 試圖하여 「뉴우 하모니」(New-Harmony)라고 하는 協同村을 세웠던 것이나 결코 成功은 하지 못하고 말았다.

最初의 信用組合은 「파라델피아」에서 農村指導者들이 小規模貯蓄을 위한 安全한 機關을 物色中에 組織하게 된 1841年的 相互貯蓄貸付組合(Saving and Loan Association)에서 始作된다.<sup>16)</sup> 當時의 商業銀行들은 賃金勞動者들의 小規模貯蓄金은 取扱하지 않고 있었다.

12) Shepard Clough, The Economics Basics of our Civilization, New York, 1953, p. 248.

13) Ewell P. Roy, op. cit., p. 55.

14) August H. Amith, Economics for our Firmes, New York, p. 467.

15) Ewell P. Roy, op. cit., p. 58.

美國의 農·水協發達過程과 組織運營의 特徵에 관하여

이와 같이 南北戰爭 以前까지의 大量은 協同組合的團體들은 一般的으로 相互扶助를 目的으로 大部分이 一部地域에서 散發的으로 小規模的 組織形態를 取하였던 것이며 任意團體로서 統一된 組合指導原則도 갖이고 있지 못하였다. 이들 團體들이 組合設立의 法的根據를 마련하게 된 것은 表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1857年 「뉴욕」州의 生命保險協同組合이 그의 組合法承認을 州政府로 부터 얻은 以後이다. 이 後로 產業革命과 南北戰爭을 계기로 農村 「그레인즈」운동이 라고 하는 大大的 農民運動이 일어나게 됨으로서 近代的 協同組合 成立은 더욱 촉진 되었고, 이것의 發展的 解散이 大規模 販賣農協이 라고 하는 發展을 指向하게 된 것이다.

〈表.1〉 美國協同組合發達年表

年 度	發 達 內 容	年 度	發 達 內 容
1752	農村相互保險協同組合設立(파라엘피아)	1869	印刷業協同組合
1794	子生産者協同組合設立	1875	「그레인즈」의 「롯취엘」원칙채택
1810	2개의 酪農業協同組合	1877	製藥業者協同組合
1816	農村相互貯蓄組合 탄생	1875	農民同盟結成
1825	「오웬」이상촌 건설(인디아나)	1882	住宅協同組合
1831	都市貯蓄貸付組合 탄생	1887	小賣食料品購買協同組合
1840	消費者協同商店組織(보스톤의 재봉사 조직)	1887	倉庫協同組合設立
1842	相互生命保險組合(뉴욕)	1889	果實販賣協同組合聯盟設立
1845	消費者協同組合 탄생 (보스톤)	1897	「산키스프」協同組合聯盟設立
1857	生命保險協同組合法 承認(뉴욕)	1901	農民곡물去來協同組合聯盟設立
1862	自作農地法公布	1902	教育協同組合聯合會設立
1863	「롯치레임」式 消費組合 (토오렌스·마사추세츠)	1903	全國農協聯合會設立
1865	職工勞動者協同組合法承認(미시간)	1909	최초金融組合法제정
1866	마사추세츠州 소비조합법 제정	1916	聯邦土地銀行設立
1867	「그레인즈」運動開始	1916	消費組合中央會設立
1868	펜실바니아州 소비조합법 제정	1917	農林部協同組合法案草案
1868	農業保護團體組織	1926	協同組合販賣法제정
1869	酪農業協同組合 聯合會結成	1933	生產信用組合設立
1870	미네소타州 소비조합법 제정	1936	水產物販賣法제정
		1936	水產業協同組合設立

資料 : Ewell P. Roy, Cooperatives 및 協同組合辭典, (家の光協會)에서 작성.

## 수 산 경 영 론 집

그러나 1752年の「뉴욕」州 共濟協同組合 以前에도 美國에는 協同組合的團體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도쿄아빌」(Alexis de Tocqueville)이 美合衆國이라는 나라 自体가 「數많은 團體의 廣大한 集合으로 形成된 하나의 巨大한 形態의 團體」라고 指摘하고 있는 바와 같이 西歐階級社會에 대한 不滿과 既存團體에 있어서 活動이 拒否 된 자들의 移民集團으로 構成된 美國社會는 처음부터 어떠한 形態이던 그들의 身邊과 財產을 스스로 保護하기 위한 協同的努力과 組織的 團體活動이 活發하던 것은 사실이므로 獨立以前까지만 하여도 概念조차 알수 없는 수 많은 團體 組織 가운데 農, 漁民 또는 都市小市民들의 協同的 團體도 있었을 것은 充分히 짐작할 수 있다. 一部 植民地 支配階級이나 商人們에 의하여 支配되고 있었던 植民地經濟가 大都市의 出現과 農村의 市場經濟의 發達로 自給自足的 農村經濟가 차츰 貨幣經濟로 轉換됨으로써 이와 같은 團體들 가운데는 大多數의 극히 적은 賦蓄과 작은 財產 낮은 賃金으로 生活하는 大衆들에게 있을 수 있는 災難과 必要한 資金融通問題를 解決하기 위한 經濟的 協同組織體로 發展하게 된 것도 많다는 것이다.<sup>16)</sup>

### 2) 近代的 協同組合의 成立과 發達

初期 協同組合 形態의 設立過程을 거쳐 近代 協同組合의 先驅者인 「롯취·페일」型 消費者 協同組合이 美國에 처음으로 設立된 것은 1863年이다. 「로오렌즈」와 「마사추셋」에서 이의 組合이 첫 誕生을 보였으며 이어 1864年에는 「피라밸피아」에서도 같은 協同組合이 세워졌다. 이것은 近代的 協同組合인 英國의 「롯취엘」組合이 1844년에 設立된지 약 20年 뒤였다. 그러나 本格的인 協同組合運動의 始作은 南北戰爭後 疲弊한 美國農村의 復興과 經濟的近代化의 目的에서 1860年代 末에 始作된 「그레인즈」(Grange) 運動이라 할 수 있다. (後述農協成立에서 再論) 왜냐하면 처음 始發은 單純한 戰後 農村被害救濟目的에서 發端되었던 이 運動이 점차 擴大되면서 부터 單純한 社會運動의 範圍를 넘어서서 農民들의 經濟的 權益運動으로까지 發展되었다고 하는 점에서 近代的 協同組合 運動이라고 보는 것이다.

美國의 資本主義發達過程을 概觀하건대 美國의 產業革命은 英國이 經驗한 것과 같이 大衆需要品目을 生產하는 編紡織工業에서 產業革命의 氣運이 胎動하기始作하여 1860年代의 南北戰爭을 契機로 本格的인 革命으로 進行되었던 것이다. 이 時期에 일어난 「그레인즈」運動은 農民들의 合理的인 經濟活動과 新로운 農法의 普及을 目的으로, 한편으로는 倉庫業者 鐵道會社 中間商人 등을 對象으로 農民權益 保護闘爭을 全國的規模로 擴大하여 갔던 것이다. 그것은 分明히 資本主義經濟의 發展過程에서 必然的으로 일어나게 되는 勞動運動과 같은 形態의 近代的 協同組合運動을 隨伴한 農民運動의 하나인 것이다.<sup>17)</sup> 이 運動이 發展하면서 소위 「그레인즈」는 「롯취엘」運營方式을 採擇하여 經濟活動을 積極 展開하

16) Shepard, Clough, op. cit., pp. 248~249.

17) Harold U. Faulkner, op. cit., pp. 474~475.

## 美國의 農·水協發達過程과 組織運營의 特徵에 관하여

였던 것이므로 近代的協同組合 發展은 一層 促進되었다.<sup>18)</sup> 各國은 資本主義의 成立과 그의 發達過程에 따라 程度의 差異는 있어도 大體로 勞動運動과 いり한 協同組合運動을 同時に 經驗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가운데서도 英國의 產業革命 以後에 일어난 初期勞動運動(Luddite Movement)과 「오웬이즘」의 發生은 그 代表的인 例라 할 것이다.<sup>19)</sup> 물론 「프랑스」獨逸 등 先進資本主義國家들도例外는 아니다.

1860年代 以前에 設立된 協同組合들은 大部分이 任意團體이었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一般會社法<sup>20)</sup>하의 非營利團體로 組織되어 있었던 것이 「그레인즈」운동 이후에 비로소 <表.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全國農業保護團體를 비롯한 酪農業協同組合聯合會 倉庫協同組合 등 많은 農民協同組合이 組織되고 資本主義發達에 따라 점차 大資本의 壓迫이 小費者 中小生產者들에게 크게 미치게 되자 商工業者協同組合, 消費者協同組合 등의 組織이 活發하게 되었으며 各州는 1857年의 「뉴욕」州 生命保險協同組合法 承認에 이어 各種의 組合法를 制定하게 되었다. 이로서 組合에 關한 諸問題를 特別法으로 다루게 된 것이다.

協同組合에 關한 各種 法律의 立法活動이 가장 活發하였던 時期는 1920年 以後였으며 또한 이 時期에는 農協의 경우 地方組織(local organization)에서 地域組織(regional organization)으로 擴大되거나, 數個의 群小組合들이 作目別 業種別로 統合 再編成되는 傾向을 나타내게 되었다. 또한 1936年에는 農村電化促進法을 制定하고 協同組合으로 하여 금電氣施設을 擔當케 함으로써 美國의 農村에 대한 電氣革命을 일으키는데 農協은 主導的役割을 擔當하였다.

美國에 있어서 地方單位와 地域單位란 前者は 郡(county)單位를 말하는 것이며, 後者は 州(state)單位를 뜻하는 것으로 19世紀 末부터 農協은 地方單位에서 州單位로 組織의 擴大를 보이기始作하여 <表.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20世紀에 들어서면서 부터 이는 더욱 大規模組合 내지 聯合組織으로 發展 되었다. 이와 같은 現象은 美國農協이 人間的結合과 地緣性에 基礎를 두는 傳統的組織에서 벗어나 資本主義進行에 따라 하나의 經濟的 事業組織으로서 市場對應ability 確保를 위한 協同組合經營의 새로운 方向轉換을 模索한 結果라고 볼 수 있다.

## II. 農協의 發達과 그 機能

### 1. 「그레인즈」運動

1860年 以後 美國의 產業資本主義는 急進的으로 發展하였으나 反面에 農村은 人國의 都

18) 崔鍾軾著, 農業協同組合論新講, 青丘出版社, 1966, p. 156.

19) Beatrice Potter, Cooperative Movement, London, 1920, pp. 2~12.

20) 各州가 植民地時期부터 州自治法으로 採擇한 會社法外에 聯邦政府가 最初로 會社設立에 關한 立法을 한 것은 1811年이며 組合法 탄생前의 協同組合은 이 法에 근거하여 설립되기도 하였다.

## 수 산 경 영 론 집

市移動으로 因한 勞動力 不足과 農業資材를 비롯한 消費者 物價의 暴騰, 農業機械化에 의한 農產物過剩生產등으로 農業商品價格이 暴落하는 등 諸不利한 現狀이 겹쳐 일어나게 됨으로 오히려 不況을 맞이하게 되었다. 한편 鐵道會社는 農產物輸送料를 不當하게 徵收하였으며 倉庫業者들의 農產物保管에서도 많은 保管料 부과 그리고 農產物去來商들의 高利貸的橫暴에 의한 農產物의 公正去來妨害등으로 農民經濟는 負債와 저당권에 끼여 二重의 긴박을 당하고 있었다.

「그레인즈」運動(Granger Movement)은 이때 일어난 農民組織運動 및 農村經濟復興 운동으로서 農林省의 한 官吏였던 「오리보 케리」 (Olive Hudson Kelly)가 主導하여 1867年부터 약 20年間 持續된 農民運動이었다.<sup>1)</sup> 南北戰爭後 美國農村은 大体로 消費者物價는 上昇하고 있었음에 反하여 農民들의 農產物價格은 農產物去來業者, 中間商人 혹은 加工業者들에 의하여 不當하게 競爭原理自体를 侵害 당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農產物의 輸送 保管業者들로부터도 不當한 料金착취 輸送 및 保管의拒否 등 갖은 橫暴를 農民들은 받고 있었다. 한편 產業革命과 더불어 일어난 農業의 機械化에 대하여 農民들은 아직 새롭게普及된 農業機械에 대한 操作能力도 充分하지 못하였다.

「O. 케리」는 이와같은 狀況下에서 農民들을 保護하고 自體能力을 培養하기 위해서는 農民 스스로의 團結力強化와 社會的 教育的 組織 밖에 없다고 본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크럽」을 組織하여 農民들의 團體購買 販賣活動을 통한 經濟生活을合理化시킴으로써 目前에 우선 經濟的利益이 展開되는 것을 보여 주었고 한편으로는 前進的인 農法의 普級과 더불어 組織活動의 重要性과 團體運營方法을 깨우쳤다. 많은 農民들의 呼應을 얻어 急進的으로 發展하여 가기始作한 이 運動은 1875에는 약 20,000個의 「그레인즈」와 750,000명에 달하는 農民들을 會員으로 포섭하게 되었고 1880年에는 會員이 무려 250萬으로增加하다.<sup>2)</sup>

1880年 以後 이 運動은 政治參與와 運營의 不實 및 南部農村의 保守的思想 등 要因으로 말미암아 急速한 衰退期에 들어 갔으나 全國 農業者同盟(The Farmer Alliance), 農產物販賣協同組合 등을 탄생시키고 새로 組織되는 農協에 民主主義的經營(democratic control), 共同의 福利(mutual benefit)라는 理念을 繼承하여 줌으로써 近代的農協運動에 커다란 業績을 남겼다.

結局 產業革命을 거쳐 資本主義的工業의 發達과 함께 農業에 있어서도 貨幣經濟가 浸透됨으로써 商品生產이 活發하게되고 農村에 있어서의 市場의 擴大는 물론 農業의 商品生產活動을 可能케한 새로운 農耕方式, 生產技術의 變革등이 農業의 資本主義化를 促進하게 됨으로 個別農民은 資金의 需要와 商品의 販賣問題에 있어서 各種 農協成立을 必然的으

1) Harald U. Faulkner, op. cit., p. 474.

2) Ibid., p. 476.

## 美國의 農·水協發達過程과 組織運營의 特徵에 관하여

로 要求하게 되었다. 그러나 資本主義가 獨占段階에 들어서게 되자 이제는 農協이 大資本  
내지 大企業이 要求하는 市場 擴大의 機能的役割을 하게 됨으로 1800年代 末의 「그레인  
즈」운동은 새로운 大單位農協의 成立과 함께 衰退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 2. 農協의 發展

20世紀 初까지는 美國農協의 組織 全盛期였다고 할 수 있는데 주로 「그레인즈」에 代身하  
여 設立된 販賣組合이 大部分을 차지한다. 1887~1888年에 設立된 各州의 農業倉庫協同組  
合, 「캘리포니아」「프로리다」「뉴저지」 그리고 「뉴욕」 등의 諸州에 남아 있는 파일販賣  
協同組合은 그 代表의인 것들이며 中西北地方의 家畜販賣協同組合 「인디아나」주의 羊毛生  
產者組合(wool grower Cooperatives)들도 이 무렵 組織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前述한 바와 같이 美國의 農協들이 大規模專門事業體의 協同組合으로 協同組合 本質의  
變質의 特徵을 나타내기始作한 것은 世界第1次大戰을 前後한 時期였다. 協同組合들이 이  
와같이 機能의 分化와 規模의 擴大를 일으키면서 새로운 類型으로 變貌를 바꾸지 않을 수  
없었던 社會經濟的背景을 잠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890年에 世界最初의 獨占禁止法<sup>3)</sup>이 制定될 정도로 이미 美國의 資本主義經濟는 19世紀  
末부터 서서히 獨占資本主義 단계로 접어들기始作하였으며 世界第一次大戰을契機로 일층  
그 發達이 促進되었다고 하는 것은前述한 바있다. 1920~1930年에 이르는 약 10年間 걸쳐  
美國資本主義經濟는 소위 新時代(New-Era)로 指稱되는 未曾有의 好況期를 맞이하고 있었  
다. 「샤먼」法制定前에 이미 資本의 集中現象과巨大企業이 屬出하였으며 企業組織의 새로  
운 形態로서 株式會社制度가 廣範圍하게 採用되고 있었다. 그리고 「카르텔」과 「트라스트」組  
織의 持主會社 탄생과 孟列한 企業 合併을 통한 大資本의 市場獨占은公正한 去來와 商業  
의 自由活動을 크게 制限하고 있었다. 農·水協 등도 去來制限的 團體機能을發揮하지 않  
을 수 없게 되었던 것이므로 특히 農協販賣事業은 獨占資本에 대항하기 위하여 大量出荷  
大量集荷 및 商標의 選擇에 이르기까지 農產物流通機構을 農民的 支配下에 두려는 獨占的  
形態로의 轉換이 要請된 것이다. 이것이 農協의 橫的組織을 더욱 強化한 聯合體 組織의  
發展 要因이 되었다.

現 美農林省 農業經濟局長 「파알버그」(Don Parrlberg)는當時의 農協을 다음과 같이 묘  
사하고 있다. 「農協은 市場流通의 規制, 「마케팅—코스트」의 節減, 效率性의 提高, 品質改  
善 등에 있어서 機敏한 리더쉽(astute-leadership)을發揮함으로써 農協의 能力を 誇示하  
였다.」 따라서 지난 1920年代의 協同組合運動은 確實히 強力하였고 「農民들은 도움을 얻었다

3) 1890 7. 2 Sherman 이 提案하여立法化된 獨占禁止法 "An Act to protect trade and  
Commerce against unlawful restraints and monopolies"를 말 함.

## 수 산 경 영 톤 집

는事實을 確信하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을 오늘의 農民들은 잘 알고 있다.<sup>4)</sup>」 이어 「파알 베크」는 오늘날 農產物去來協同組合(Bargaining Cooperatives)에 대하여 「農民들이 組織을 하였을 때는 加工業者와의 契約能力은 거의 同等하나 만약에 組織을 하지 않았을 때는 두 交涉團體間의 힘은 不均等해진다」고 하면서 1920年代의 農協기능을 예로 들어 去來協同組合의 重要性을 強調하고 있다.

運動初期부터 協同組合이 이와 같은 販賣部門 中心으로 發達하면 것이 信用部門으로 運動方向을 轉換한 것은 1930年代의 世界恐慌 以後이다.

여러가지 要因이 있었으나 「뉴욕」資本市場의 崩壞가 美國 金融秩序에 混亂을 起시킨데서 비롯된 1930年代의 이 공황은 美國 農業에도 크게 餘波를 미쳤다. 1933年 3月 실제로 全미국의 모든 銀行은 門을 닫게되고 通貨供給마저 麻痺되었던 것이다. 過剩生產으로 타격을 받고 있던 農村에는 農業信用마저 惡化되었다. 「뉴딜」政策을樹立한 정부는 종래의 自由經濟원칙을 수정하여 공황 대책을 위한 統制經濟로 轉換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며 農業에 있어서도 農業調整法(1933.5月)으로 파이생산과 가격을 規制하고 농업신용擴大를 위한 非常農地擔保法(1933), 農業信用法(1933), 生產信用組合法(1933)을 각각 制定하여 組合金融機關을 設立함으로써 農業金融을 系統的 制度金融体制로 轉換시켰다. 農業信用協同組合은 이를 契機로 發展期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2次大戰後 現在에 이르는 기간에 보인 미국 農協의 經營政策은 一般 企業이 經營合理化運動을 벌이게 됨으로 하나의 大規模 經營体인 農協도 内部經營의 充實을 위하여 高度로熟練된 經營者와 職員을 採用하게 되고 組合員의 主要事業支援을 위한 組合內의 機構와 補助部署를 개편하는 문제 등을 취급하고 있다.<sup>5)</sup>

### 3. 農協의 形態와 機能

各州마다 獨者的인 協同組合法을 가지고 있으며 어여한 分野이든 組合設立에 制限없이 自由 組織의 保障下에 自發的인 發達과정을 거쳐온 美國의 農協은 分野別 機能別로 그 種類가 다양한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農·水協은 販賣 購買 信用 등 事業爲主로 하나의 協同組合이 綜合의 인 業務를 取扱하고 있으나 美國의 경우는 이러한 經濟的機能의 獨立된 專門農協뿐 아니라 農村의 電化, 通信 심지어 農村의 記念事業을 위하여서도 常設 協同組合을 組織한다.

Roy는 이러한 美國의 다양한 協同組合에 關하여 「그 範圍와 種類에 對하여는 여러가지 角度에서 많은 考察과 討論이 있어야 하겠으나 먼저 協同組合의 機能에 따라 形態를 分類하는 것이 가장 理想的」이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그는 農協의 形態를 「서비스」型 協同組

4) News for Farmer Cooperatives, U. S. Dept of Agriculture, April 1970, p. 3.

5) Phillippe. R. and other, Do you know your cooperatives? Iowa Institute of cooperation, 1967, p.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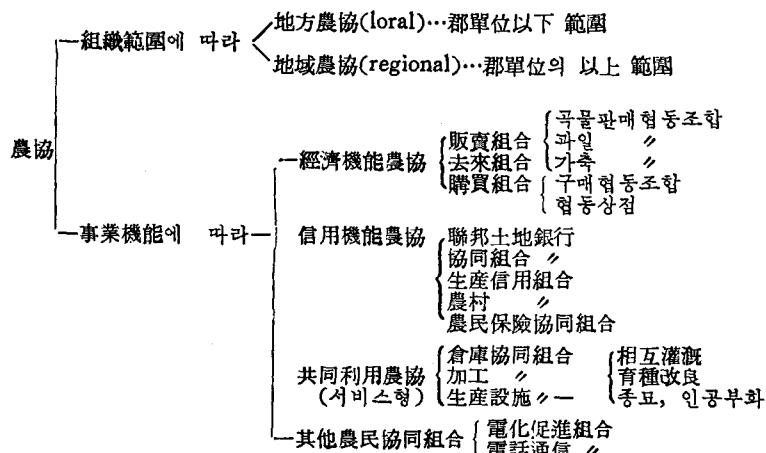
### 美國의 農・水協發達過程과 組織運營의 特徵에 관하여

合, 販賣型 協同組合 供給 및 購買型 協同組合, 信用協同組合 및 相互火災協同組合 등 5個 協同組合으로 分類하고 있으며 이들은 다 典型的인 協同組合方式으로 運營되었을 때를 말한다고 하고 있다.<sup>6)</sup>

한편 「스노즈라스」(Millton M. Snondgras)역시 1752年에 「벤자민 프랭프린」이 세운 農民災害保險協同組合 이래 美國에는 많은 協同組合이 成立되었으며 販賣, 購買 [서비스] 加工 등의 協同組合이 그 機能과 종류에 따라 너무도 다양함으로 一定한 分類가 困難하다고 말하고 있다.<sup>7)</sup> 그러나 協同組合辭典에서는 廣意의 美國 農協이란 農業과 農村社會의 生活에 關聯된 全 協同組合을 말 하나 狹意로는 農協의 販賣 購買 및 利用事業의 經濟的機能과 信用機能을 發揮하는 協同組合을 가르킨다고 하여 非經濟的 協同組合 形態인 其他諸協同組合들은 農協에 包含시키지 않고 있다. 이는 「비지고진스키」(W. Wygodinski)의 組合形態 分類方式에 입각한 것으로 機能中心의 이와같은 分類는 오늘날 仍히 採用되고 있다<sup>18)</sup>.

그러면 上의 見解를 綜合하여 現在 美國農村內에 조직되어 있는 이들 各種의 協同組合을 다음과 같이 機能에 따라 分類하여 볼 수 있다.

#### 美國 協同組合의 形態



이들 多樣한 協同組合 가운데 主要한 몇 가지 種類의 農協만 들어서 그性格 및 機能을 간단히 說明한다.

##### 1) 販賣協同組合(Agricultural Marketing Cooperatives)

畜產 과일 酪農 穀物의 4가지 種類로 크게 나누어지며 이 안에서 포도, 家畜, 小麥, 編花 등의 作目別 業種別 販賣協同組合으로 다시 組織된다. 大體로 生產과 市場形成의 性格

6) Ewell P. Roy, op. cit., p. 126.

7) Millton M. Snodgrass, Agricultural Economic and growth, New York, 1970, p. 187.

8) 家の光協會, 協同組合辭典, p. 159.

## 수 산 경 영 총 집

에 따라 耕物販賣協同組合은 地方(local)協同組合으로, 畜產 酪農 과일 等의 業種은 보다 範圍가 넓은 地域(regional)組合으로 組織되는 特徵이 있으며 組合의 規模는 地方組合이 평균 300의 組合員, 地域組合은 500명~3,000명까지의 多은 組合員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평균事業規模는 1970年에 2,489千\$에서 1974年에는 3,800千\$로 增加하였으며 農產物市場占有率(marketing share)은 1969年現在 平均 27%이다.<sup>9)</sup>

그러나 「스노즈라스」의 非公式集計에 의하면 全美國 과일 生產의 60%, 「밀크」의 45%, 耕物의 40%가 農協에 의하여 市場化되고 있다고 하며 美國農業의 世界的的發展과 깊은 關係를 맺고 있는 것은 이 販賣農協임을 強調하고 있다.<sup>10)</sup>

1970年現在 여기에 加入되어 있는 農民數는 약 3百萬以上으로 美國全体農民數(農業人口 아님)의 70%에 해당된다. 種類別 販賣協同組合 및 그의 市場 占有率現況은 다음 〈表 2.3〉과 같다.

〈表. 2〉 販賣農協現況(1969)

組合種類	組合數	事業規模(組合當平均)
酪農業協同組合	1,046	4,437.6千\$
耕物	2,556	1,041.6
家畜	421	4,398.5
과일, 채소	504	3,367.0
설탕생산	65	9,125.8
家禽	321	1,656.0
綿花	561	947.8
米穀	54	6,176.1
담배	28	9,336.3
豆類	76	3,064.5
땅콩, 완두콩	52	627.7
羊毛	191	110.7
其他	147	368.6
計	6,022	2,489.8

資料: News for Farmer Cooperatives, June 1971. 4

〈表. 3〉 販賣農協市場占有率(%)

品目 및 協同組合	1950	1960	1969
綿 花	12	22	26
酪 農	47	61	69
과 일 및 채 소	20	21	29
穀 物	29	38	33
畜 產	13	13	13
家 畜	7	10	9
其 他	15	32	10
計	20	23	27

資料: 同上

### 2) 購買協同組合(Farm Supply Cooperatives)

처음에는 販賣農協의 購買事業에서 始作되어 第2次 世界大戰以後 급진적인 發展을 보였다. 이것은 販賣農協에 比하여 規模가 작고 地方組織의 特徵을 나타낸다. 州單位 以上的 地域組合은 1970年에 2,700個組合이 있으나 다른 종류의 農協이 購買業務까지 取扱하고 있는 것과 합치면 全體購買取扱組合의 數는 29,358個組合이다.

9) News for Farmer Cooperatives, June 1971, p. 4.

10) Millton M. Snodgrass, op. cit., p. 189.

### 美國의 農・水協發達程過과 組運過營의 特徵에 관하여

農業用資材, 肥料는 물론 石油, 建築資材, 食料品등 다양한 品目을 취급하고 있으며 全國農民의 肥料수요의 33%, 石油 수요의 28%를 供給하여 주고 있다. 그러나 다른 資料에서는 이보다 훨씬 높은 比率인 全農民需要量의 70%를 擔當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美國農業의 重要한 聯關產業이라고 까지 말하고 있다.<sup>11)</sup> 購買取扱組合의 現況 및 이의 市場占有率은 다음 <表. 4, 5>와 같다.

#### 3) 「서비스」協同組合(Agricultural Service Cooperatives)

家畜의 人工孵化 水產物養殖業農民을 위한 「갸트피쉬」(Catfish) 치어의 보급, 種畜, 種苗, 濟溉 水利組合, 木草組合, 輸送, 貯藏, 製粉, 冷凍 등 기타 다양한 「서비스」事業을 擔當하는 農協으로 販賣, 購買의 組合 및 農業生產의 補完的機能으로 存在한다. 1970年 30千명의 組合員과 181個의 組合이 있으며 1960年的 組合當事業取扱高는 1,459千\$에 達하였다. 다른 農協에 比해 그 數가 작은 것은 販賣, 購買協同組合이 當該組合의 附帶사업으로 利用機能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組合組織은 local 中心이나 購買組合보다는 範圍가 넓은 것이 보통이다.<sup>12)</sup>

<表. 4> 購買事業取扱組合現況 (1969)

品 目	組合數	組合當 取扱 規模
飼 料 購 買	4,215	274.9千\$
石 油	2,747	291.7
肥 料	4,318	151.6
建 築 材 料	2,200	65.1
種 子 種 苗	3,993	33.9
農 藥	3,640	39.7
農 機 構	1,568	69.0
食 料 品	741	108.2
農 業 用 器	1,061	34.9
其 他	4,875	68.9
計	①29,358	573.9

① 專門購買協同組合 數는 州單位 2,775個와 州單位以下 3,498個 全體 6,273個임

資料: News for Farmer Cooperatives, June 1971, p. 4.

協同組合銀行, 2개의 農業信用公社로 構成되는 農業信用關係의 協同組合을 통일어 農業信用協同組合이라 한다.

「와싱톤」에 本部를 둔 協同組合 銀行을 頂點으로 하여 農民의 信用擴大와 美國農業生產의 成功을 保障하는 農業信用制度下에서 組織된 機關이다.

11) Ewell P. Roy, op. cit., p. 138.

12) 家の光協會, 前揭書, p. 160.

<表. 5> 農村購買協同組合의 市場占有率 (%)

品 目	1950	1960	1969
사 료	18	17	17
종 자	16	19	19
비 료 및 석 회	19	24	33
석 유	19	24	28
計	13	17	18

資料: 同上

#### 4) 農業信用協同組合(Agricultural Credit Cooperatives)

약 550個의 聯邦土地銀行과 800個의 農村信用組合, 400個의 生產信用組合, 13個의

協同組合銀行, 2개의 農業信用公社로 構成되는 農業信用關係의 協同組合을 통일어 農業信用協同組合이라 한다.

## 수 산 경 영 론 집

### 5) 聯邦土地銀行(Federal Land Bank Associations)

農民들에게 長期抵當貸付를 目的으로 1916年에 聯邦農業貸付法(Federal Farm Loan Act, 1916)에 의거 設立된 組合金融機關이다. 美國全体에 12個의 이 銀行이 組織되어 있으며 쳐 음에는 政府出資에 의해 運營되었으나 현재는 全額 農民出資로 轉換되어 農民의 支配에 의한 協同組合으로 經營되고 있다. 擔保對象은 主로 農民들의 農土이며 評價額의 65%範圍內에서 5年以上 40년까지의 貸付期間을 設定하고 있다.<sup>13)</sup>

### 6) 生產信用組合(PCA. Production Credit Associations)

1933年 「뉴딜」政策의 農業信用 擴大方案에 의하여 制定된 農民信用法(Famer Credit Act 1933)에 의하여 全國 農漁村地域에 設立된 農漁民의 直接信用機關이다. 主로 季節的需要의 生產資金을 取扱하나 最近 1971年の 同法 改正으로 生活資金까지 貸付하고 있다. 期間은 7年以內의 短期性資金이다.

### 7) 協同組合銀行(Banks for Cooperatives)

生產信用協同組合과 같이 1933年的 農民信用法에 의해 設立된 地方農協을 對象으로 하는 組合 金融機關이다. 12個地域에 1個씩 設立되고 「와싱톤」에는 協同組合中央銀行(Central Bank for Cooperatives)가 있다.<sup>14)</sup>

### 8) 農村信用組合(Rural Credit Union)

앞의 諸 信用協同組合과 달리 農村地域의 小農民들이 會員이 되어 預金과 貯蓄을 취급하여 이를 基金으로 하여 信用事業도 擅하는 相互金融組合이다. 이것은 小農이 많은 美國의 中西部에 發達해 있고 會員의 均質性을 維持하고 있는 것이 特徵이다. 現在 약 500개의 組合, 520萬명의 組合員이 있다.<sup>15)</sup>

以上의 農業信用協同組合은 農業金融을 全擔하고 있으며 美國農業信用處(Farm Credit Administration)에 의해 統轄되는 制度金融的農業信用体制를 整備하고 있다.

## 4. 美國人の 協同組合活動과 農協의 現況

오늘날 世界 많은 國家들은 協同組合 問題를 일층 關心깊게 다루고 있으며 사람들은 그들의 日常生活에서 일어나는 基本問題를 個別的 活動보다는 協同組合의 團體組織을 通하여 解決하려는 경향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어 세계의 조합인구 수도 매년 증가 하고 있다. 그러면 美國人들의 協同組合活動은 다른 나라들에 비하여 어떠하며, 農協의 地位는 어느정도인가를 간단히 살펴본다.

13) Ewell P. Roy, op. cit., p. 130.

14) Ibid., p. 131

15) Ibid.

美國의 農·水協發達過程과 組織運營의 特徵에 관하여

〈表. 6〉 美國의 協同組合現況 (1965)

形態別	組合數	組合員數(人千)	構成比	
			組合	組合員
農業協同組合	24,615	12,775	31.7%	44%
消費者協同組合	38,348	15,614	49.4	52
其他協同組合	14,591	592	18.9	3
計	77,554	28,981	100.0	100.0

資料：〈表. 2〉와 같음。

〈表. 7〉 國別協同組合人口對比(1969) (單位: 千人)

國別	組合員口	總人口	組合員對總人口(%)	國別	組合員口	總人口	組合員對總人口(%)
오스트리아	2,084	50,23	14.1	파키스탄	3,843	92,727	4.1
불가리아	1,752	7,867	22.3	체코슬로바키아	2,140	13,654	15.7
벨기에	819	9,153	8.9	덴마크	1,521	4,581	33.2
프랑스	6,765	45,542	14.8	네덜란드	1,697	11,480	14.9
독일	3,706	53,373	6.9	가나다	3,890	17,814	21.8
그레시아	557	8,327	6.7	미국	28,982	180,670	16.0
아이스랜드	315	2,834	11.1	알제리	377	20,006	1.8
이태리	4,375	49,361	8.9	칠레	56	7,340	0.7
놀웨이	467	3,586	12.1	콜롬비아	18	14,132	0.12
스웨덴	2,554	7,480	34.1	도미니카	7	3,014	0.23
스위스	783	5,351	14.6	멕시코	300	34,923	0.8
쏘련	43,070	214,400	20.0	알제리아	5	11,020	0.05
영국	13,614	52,539	25.9	아랍연방	31.5	25,929	0.12
세이론	681	9,096	7.5	버마	1,216	20,662	5.8
인도	34,424	432,567	7.7	오스트리아	607	7,075	8.6
이스라엘	590	2,114	27.9	뉴질랜드	1.8	2,372	
일본	10,311	93,200	11.1	計(34個國)	173,431.3	1,545,893	11.2
한국	1,850	24,665	7.5				
말레이지아	302	6,809	4.4				

資料：家の光協會. 協同組合辭典,

위의 〈表. 7〉에 의하면 1969年 34個國의 總人口는 1,545,893千명에 達하고 여기에 各種協同組合에 加入된 人口는 173,431千명으로 11.2%에 達한다. 美國은 同年度의 180,670千명의 人口 가운데 16%에 해당하는 28,982千명이 協同組合組合員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다른 여러 나라와 比較하여 볼 때 加入率이 매우 높은 편이다. 이를 미국협동조합의 形態別로 보면 農協人口가 44%로서 12,775千명 消費組合人口가 53%로서 15,614千명이며 其他協同組合人口는 592千명으로 3%이다.

## 수 산 경 영 톤 집

美國에 있어서 消費者協同組合은 一般生活用品을 購入하기 위한 都市, 農村地域에서 뿐 아니라 大學 工場 各 機關內에도 잘 發達되어 있으며, 託兒所의 運營 住宅의 建設 電氣 및 電話의 架設까지도 常設協同組合을 組織하여 推進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오늘날 美國人들은 그들의 日常生活에서 부터 事業 및 「레크레이션」에 이르기 까지 協同組合的 組織과 團體를 통하여 解決하고자 하는 強한 組合意識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現狀에 대하여 美國의 한 經濟學者는 「오늘날 美國에 있어서 協同組合은 작은 것으로는 家計와 小賣業에서 부터 큰 것으로는 都賣業과 대규모 工場에 이르기까지 그가 關與하지 않는 部面이 없을 뿐 아니라 事業範圍도 점차 擴大되고 있어 組合自身의 社會的責任이 매우 크게 되었다」고 하면서 앞으로 協同組合問題에 對해하여는 그 本質과 事業運營法則에 對하여 資本主義社會의 또 하나의 經濟制度로서 많은 研究가 행하여져야 할 것을 強調하고 있다<sup>16)</sup>.

여기에 대하여 農協의 地位는 <表.6>에 의하면 全美國 協同組合數 77,554個中 24,615個組合으로서 31.7%이고 組合員數는 44%를 占한다. 最近의 統計로서 좀 더 자세히 對比하여 보면 1970年現在 美國 人口 204,335千명 가운데 主要 協同組合이라 할 수 있는 販賣, 購買, 「서비스」의 協同組合에 加入해 있는 人口는 6,355千명으로서, 全體 人口의 3.1%가 農協組合員이며 同年度의 農業 人口 9,712千명에 대하여는 64.8%가 組合員으로 加入하여 있는 셈이다. 여기에서 앞의 <表.7>에 나타난 1969年的 組合員統計數值와 1970年的 그것 사이에 커다란 差異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表.9>의 協同組合以外에 美國 農村에 많이 組織되어 있는 相互農村信用組合을 비롯하여 電氣, 電化 및 그 外 各種의 協同組合 統計資料가 <表.9>에는 包含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表.8〉 信 用 協 同 組 合 現 况 (1970)

形態	組合數	組合員	組合當		事業規模
			組合員數	事業規模	
土地信用組合	557	62,670	1,117		
生產信用組合	433	313,188	722	30(千\$)	13,038,446(千\$)

資料 : U. S. Dept of Agricultural, Agricultural Statistics, 1974, pp. 490—491.

1970年度의 美國 農民數와 比較하여 볼 때 農協組合員數는 農民數 全體보다 훨씬 多은 것을 알 수 있다. 同年度의 農民數는 家族農民 3,348.1千명, 雇傭農民 1,176.4千명을 합쳐 4,522千명으로 農民들의 農協 加入率을 40.5%나 超過하고 있다. 이것은 農民들이 販賣組合을 비롯하여 購買, 信用, 利用 및 其他 農村의 各種 協同組合에 復數로 加入하고 있다

16) Clifford L. James, Pinciple of Economics, New York, 1958, p. 55.

総國의 農·水協發達過程과 組織運營의 特徵에 관하여

〈表. 9〉

年 度 別 農 協 狀 況

(單位: 千人)

年度	協 同 組 合 数				組 合 員 数				總人口	農 業 人 口	
	販賣	購買	服務	計	販賣	購買	服務	計		總人口	農動人口
1959	5,828	3,297	220	9,345	3,622	51	3,600	7,273	176,551	16,592	7,342
1960	5,727	3,222	214	9,163	3,473	50	3,180	7,203	180,007	15,635	7,057
1965	5,194	2,949	186	8,329	3,636	36	3,154	6,826	193,709	12,263	5,610
1970	4,834	2,775	181	7,790	3,103	30	3,222	6,355	204,335	9,712	4,522

資料：前掲書

〈表. 10〉 農 協 現 況 (1970)

區分	形態別	販賣協同組合	購買協同組合	外貿△ 協同組合	生產信用組合	計
組合數		4,834	2,775	181	433	8,223
組合員數(千人)		3,103	3,222	30	313	6,668
事業規模(100萬\$)		18,389①	5,988②	—	13,038③	37,415
組合當	組合員數	640	1,160	1,660	722	810
	事業規模(100萬\$)	3.8	2.2	—	30	4.5
	組合員當事業規模(千\$)	587	189		41,500	5,896.7

※ ① 市場販賣高 ② 購買供給高 ③ 貸出高 資料：前掲書

〈表. 11〉

美 國 農 協 的 規 模 (1969)

美國農協當事業規模 ①	3,63.7千\$	販賣 購買
韓國 ◎ ②	370.4◎	◎ ◎ 信用
韓國漁協當 ◎ }	186.0◎	◎ 利用 信用
◎ }	370.4◎	◎

① 美國은 〈表. 2, 4〉에서 作成

② 韓國水產經營學會, 水濟經營學論集 第5卷 第1號, 1974, p. 59에서 作成.

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한편으로는 美國農民들의 協同組合에 대한 關心과 農協의 農民經濟에 대한 기여도가 큰 것을 뜻하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을 것이다.

한편 〈表. 10〉에 의하면 1個州에 약 151個로 組織되어 있는 美國農協은 1974年에 販賣, 購買, 서비스, 信用의 4個分野에 平均 450萬\$에 達하는 組合當 事業 규모를 確保하고 있다. 이를 다른 나라와 比較해 보기 위하여 〈表. 11〉에서 1969年的 事業 규모를 對比시켜 보면 取扱事業 種類에 약간의 差異가 있는 하나 우리나라의 漁協과는 무려 16倍, 農協과는 8.1倍의 조합경영 규모의 格差를 보여 주고 있다.

以上과 같이 美國 農協의 發達過程과 그 現況을 概括的으로 더듬어 봄으로써 알 수 있는 것은 앞에서 言及하여 온바와 같이 種類와 機能이 多樣하고 專門化되어 있으며 대규모 事

## 수 산 경 영 론 집

業體로 存立하고 있다는 점이다.

### III. 水產業의 現況과 水產業協同組合

#### 1. 美國의 水產業 現況

##### 1) 歷史的 概觀

「아메리카 인디안」들의 最初의 生活이 自然生產物의 採取나 狩獵 漁撈活動에 依存하던 原始社會였을 것이라는 것은 더 說明할 必要조차 없다. 美大陸에 人類가 가장 처음으로 定着한 것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크로이체」(R. Kreuzer)는 最近 그의 論文(Fish and its place in culture)에서 美國漁業의 歷史를 紀元前 數千年까지로 보고 있다. 즉 「人類가 유우라시아로 부터 마제란 海峽을 거쳐 맨 처음 北美에 到達한 것은 紀元前 11,000~9,000年경일 것이라고 하며 美國의 漁業은 이 最初의 유우라시아 人們의 原始生活과 더불어 始作되었다<sup>1)</sup>」고 「크로이체」는 推測한다. 그러나 漁撈活動은 殺生을 「타부」로 여기는 이들 原始族들의 「토템」信仰에 關聯되어 發展이 制約되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sup>2)</sup> “美國의 大西洋漁業”에서 「볼그스트럼」(Geo Borgstrom)은 美國最初의 產業은 漁業이었을 것이 틀림없다<sup>3)</sup>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그는 「北美에 있어서의 漁業은 그럴만한 充分한 資料가 있다는 것이다.<sup>4)</sup> 그러면 「볼그스트럼」의 資料를 中心으로 그外 몇 가지 文獻을 뒷받침하면서 美國漁業의 歷史에 대해 概觀한다.

「볼그스트럼」은 「뉴우 파운드랜드」와 「그랜드방크」 그리고 「뉴우 잉글랜드」등 美國 近海에서 前부터 形成되고 있었던 豐富한 漁場이 처음으로 西歐人들에게 알려진 것은 「콜럼보스」의 美大陸 發見以前이라고 보고 있다. 즉 1450年에 이미 中世海洋列強國의 하나인 「풀투칼」漁民들이 이 大西洋漁場에까지 出漁한 事實이 있으며 英國의 漁船들도 青敎徒들의 大陸上陸 複數 以前에 이미 英國의 「브리스톨」(Bristol) 漁港으로부터 이 漁場에까지 와 漁業에 從事하였다는 記錄이 있다는 것이다.<sup>4)</sup>

또한 正確한 年度는 알 수 없지만 「프랑스」의 「브레스頓」(Breston) 漁民들도 1500年以前에 北美漁場附近에 來漁 하였다는 記錄과, 1503年 다시 「프랑스」의 「산타말로」(StMalo) 港을 떠난 漁民들이 이 漁場에서 漁業을 하고 돌아 갔다는 記錄도 傳한다.<sup>5)</sup> 「뉴우파운드랜드」와 「뉴잉글랜드」好漁場이 西歐人들에게 比較的 正確하게 알려진 것은 大陸發見 이후 1497年에 英國인 船員 「카보트」(John Cabot)가 美大陸을 探險케 된 以後라고 한다<sup>6)</sup>. 그리

1) R. Kreuzer, Fishery, "Fish and its place in culture", FAO, 1974, p. 42.

2) Ibid,

3) G. Borgstrom, Arthur J. Neighway, Atlantic Ocean Fisheries, London, 1961, p. 225.

4) Ibid.

5) Harold U. Faulkner, op. cit., p. 17.

6) G. Borgstrom, op. cit., p. 225.

### 美國의 農・水協發達過程과 組織運營의 特徵에 관하여

고 1506年에는 이미 1450년에 이곳에서 漁業을 開始한 바 있는 「풀투칼」이 既得權을 主張하여 이 渔場에서 渔獲한 水產物에 對하여 稅金까지 徵收한 적이 있다고 하며 더 확실한것은 1517年에 「프랑스」「풀투칼」「스페인」 및 英國의 渔船들이 무려 50餘隻의 船團을 이끌고 「그랜드 방크」 주위에서 活發한 操業을 벌였다는 것이다.<sup>7)</sup>

이상의 事實들로 미루어 보아 美國의 渔業 特히 大西洋쪽의 渔場은 이미 「콜럼보스」의 美大陸發見 以前에 西歐人們에 의해 利用되고 있었던 것이 확실하며 15世紀~16世紀初에는 이 近海에서 西歐漁船들의 競爭的인 操業이 행하여지고 있었다는 것으로 推測할 수 있다. 本格的인 植民地漁業이 開始된 것은 1602年 英國人 「고스놀드」(Gosnolt) 船長이 최초로 漁業目的의 大西洋航海를 始作한 이후이다. 이것을 中世의 「航海開拓期」에 對한 「中世漁業의 航海時期」(Fishing Voyage)라고 한다. 주로 大口, 青魚 등을 對象으로 한 유롭漁業航海가 大西洋을 향하여 繼續되자 渔業의 收益性을 認定한 中世商業 資本家들은 비로소 漁業에도 그들의 商業資本을 投資하기 始作하였으며 이로서 渔業도 重要的 植民地收奪產業으로서 登場하게 된 것이다.<sup>8)</sup>

特히 北部 「뉴우잉그랜드」의 渔業은 初期移民들의 貧困과 生計를 解決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으며, 工場賃金이 貧弱하고 農事收入이 적었던 北部植民地人們의 副業으로서도 渔業은 重要的 產業이 되었다. 當時 「뉴우 잉그랜드」의 捕鯨漁業은 상당한 企業漁業으로까지 發展하고 있었는데 「마사추셋츠」港口에는 이를 渔民相對의 造船所 船具店 消費用品의 商業도 活發하였다는 것이다. 1765年에는 이곳에 31,000명의 渔夫와 350隻의 捕鯨船이 集結해 있다고 하며 鯨油만 하여도 年間 4,000%에 達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特히 他 渔業에 있어서 보다 捕鯨漁業이 當時に 脚光을 받고 있었던 것은 石油가 出現하기 前의 鯨油는 石油에 對身하여 燈油와 潤活油 供給을 擔當한 唯一한 產業이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美國의 渔業은 西歐人們에 의하여 開發되어 온 「最初의 自然資源」이었을 뿐 아니라 開拓民들의 重要的 位置를 찾고 있었다. 그러나 美國의 經濟發展과 併行하여 他產業과 같은 發達을 繼續하지 못한 것은 西部를 開拓하여 얻은 廣大한 農土와 渔業以外의 產業發達與件이 具備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바다 그것은 아무리 開拓精神이 旺盛한 美國人們 일지라도 역시 生命을 거는 風險한 곳이라는 것이例外일수는 없었다.

#### 2) 美國의 渔業現況

最近 5年間(1965~1970)에 日本, 蘇聯, 「폐루」, 韓國 등은 約 40%以上的 渔業生產高를 增加시켜 왔는데 反하여 美國은 같은 期間에 26% 밖에 增加하지 못하였다. 그 대신 水產物需要는 約 倍가 늘어나 現在 世界第一의 水產物輸入國이 되고 있는 것이다.

7) Louis M. Hacker, the Triumph of American Capitalism, New York, 1947, p. 135.  
8) Ibid., p. 242.

## 수 산 경 영 론 집

國際漁業統計에 따르면 1971년의 美國漁業生總高는 276萬噸이며 世界의 3.9%를 占한다. 그리고 國別生產高 順位는 「놀웨이」 다음의 6位에 머물고 있다. 最近에 이르러 이러한 漁業成長이 相對的인 鈍化를 보이고 있는 理由는 지난 5年間에 世界의 漁業國들은 漁業에 대한 投資를 增加시켜 왔는데 대하여 美國은 그렇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즉 日本의 경우 1965~1970 사이에 무려 48,496隻의 漁船隻數를 늘였고 그 大部分이 最新 動力施設을 갖춘 500噸級 以上의 高度化된 大型船이었는데 반하여 美國은 같은 期間에 不過 10,261隻 밖에 增加시키지 아니 하였으며 그 大部分이 5噸級의 小型漁船이었다. 一般的으로 美國의 다른 모든 產業이 大規化되어 가고 高度의 資本制의 經營에 반하여 漁

〈表.10〉 世界漁業生産量 (1971)

國 别	生 產 量	비율	順位
美 國	2,766.8千噸	3.9%	⑥
蘇 聯	7,336.7千噸	10.6	③
카 나 다	1,289.2千噸	1.8	⑧
中 共	6,880.0千噸	9.9	④
페 르	10,611.4千噸	15.8	①
아이스랜드	1,845.0千噸	2.6	⑦
韓 國	1,073.7千噸	1.5	⑪
日 本	9,894.5千噸	14.3	②
印 度	1,279.7千噸	1.8	⑨
늘 웨 이	3,074.9千噸	4.4	⑤
英 國	1,107.3千噸	1.7	⑩
其 他	22,270.8千噸	32.2	
世界總生產量	69,400 千噸	100.0	

資料 : FAO, Yearbook of Fisheries Statistics, 1972, Vol. 32.

〈表.11〉 美國의 地方別漁業構造

	어선세력 (%)	어민분포 (%)	생산량 (%)	비고
뉴욕	17.5	15.1	21.1	
잉글랜드				대서양 및 칼프만
中部대서양	5.3	6.8	19.4	
체스apeake	15.0	61.3	16.4	
북대서양	9.8	12.1		
칼프만	13.7	16.5	14.5	
태평양연안	11.2	14.8	17.1	
알라스카	8.4	7.8	7.7	
그레이트湖	2.2	2.6		내수면
미시시피支流	16.9	10.2	12.8	
計	100.0	100.0	100.0	

資料 : OEEC, Fishery Policies, 1960, pp. 286~290  
에서 작성.

〈表.12〉 美國의 水產物利用配分狀況  
(1972)

種 類	美 國 (千噸)	世 界	備 考
鮮 魚	204.5	18.0%	29.7%
冷凍	521.8	45.9	16.6
통조림	84.8	7.5	10.3
其他加工品	135.0	11.8	12.2
魚 粉	171.6	15.1	29.6
其他 用途	18.2	1.7	1.6
計	1,135.9	100.0	100.0

資料 : 水協中央會, 海外情報, 1975. 12, p. 79.

〈表.13〉 美國의 水產物輸出入狀況  
(단위 : 千噸 · 千\$)

年 度	수 입		수 출	
	수 양	금 액	수 양	금 액
1969	1,078.7	735,941	153.5	97,647
1970	1,053.1	835,781	141.6	111,879.0
1971	1,050.9	913,469	193.5	135,758.0
1972	1,354.0	1,262,990	174.2	151,695.0
69/72	25%	71%	20%	55%

資料 : 水協中央會, 海外水產情報, 1974. 4, p. 103.

## 美國의 農·水協發達過程과 組織運營의 特徵에 관하여

業에 있어서만은 如前히 沿岸 近海漁業에 置重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漁業發達을 위한 美國의 地理的 與件은 有利한 條件에 있다. 우선 總 21,576千km의 海岸線과 9,363,405km의 大陸棚을 가지고 있으며, 대구 청어 가자미 연어 다랑어 새우 고래 등 水產生物資源이 豐富한 世界的인 漁場이 東西에 散在하여 있다. 다시 말해서 大西洋沿岸의 「뉴우잉 그랜드」近海 「멕시코」灣 「체스apeake」灣 太平洋沿岸 「알라스카」近海 등은 豐度 높은 好漁場이며, 「그레이트」湖와 「미시시피」支流의 內水面漁業만 하더라도 開發의 餘地는 업마든지 있는 것이다.

이러한 條件에도 不拘하고 美國의 漁業은 <表. 11>을 보아서도 알 수 있는 바와같이 大西洋近海漁業에만 數年동안 치우쳐 왔으며, <表. 10>이 가르키듯이 다른 漁業國들 특히 蘇聯 日本 中共 등에 비하여 確實히 뒤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美國人들의 水產物消費傾向은 大体로 冷凍水產物을消費하는 傾向이 있음을 알 수 있고 (表. 12 참조) 이러한 冷凍水產物을 비롯한 水產物의 國內消費量은 美國 國民所得의 增加와 더불어 계속 늘어나 水產物의 輸出入 格差는 약 8倍나 된다. (表. 13 참조). 美國은 이와 같이 急增一路에 있는 水產物需要를 解決하기 위하여 年間 약 12億 6千萬\$의 外貨를 支出하고 있는 것이다.<sup>9)</sup>

美國의 水產行政도 아울러 간단히 言及하게 되면 美國은 水產業을 2個部門으로 나누어 2個의 聯邦機構에서 다루고 있다. 즉 海洋을 對象으로 成立하는 漁業을 商業的海洋漁業 (Commercial Marine Fisheries)이라 하여 商務省에서 主管하고, 內水面漁業과 養殖漁業 그리고 「스포츠」로 하는 魚市 養魚 등의 漁業은 非商業的遊魚漁業 (Sport Fisheries or Non-Commercial Fisheries)이라 하여 內務省이 이를 取扱하고 있는 것이다. 州의 水產行政機構의 名稱도 一致하지 아니하여서 어떤 州에서는 自然資源局 (Dept of Natural Resource)에서 (오래된 州의 경우), 또 어떤 州에서는 漁業委員會 (Fish Commission)을 州知事 直屬에 設置하여 (미시간 州의 경우) 다루기도 한다.<sup>10)</sup>

1970년까지 商業的漁業은 遊魚漁業과 함께 內務省의 漁業 및 野生動物局 (Fish and Wildlife Service)에 屬하였던 것이 1970年 美國의 政府組織一部 改編으로 商業的 海洋漁業만은 商務省下에 國立海洋環境廳 (NOAA, National Ocean and Atmospier Administration)을 設置하고 이 NOAA內에 海洋漁業局 (National Marine Fisheries Service)을 두어 管掌케 하고 있다. 이와 같은 措置는 最近에 漁業問題가 國際的으로 重要한 爭點이 되고 있는 데서 나온 美國水產行政制度의 強化라 하겠다.

### 2. 水協의 成立과 現况

美國에 있어서 漁民團體의 組織歷史는 1770年代에 漁業의 中心地인 「뉴우잉 그랜드」와

9) Marine Fisheries Review, October 1973. 참조

10) United State Government Manual, 1975/1976, p. 282.

## 수 산 경 영 론 집

부근 北部 漁港에서 船主들이 漁業經費 絶減을 위하여 魚具, 소금, 食糧, 술 등의 物資를 共同購入하였다는 記錄이 있기는 하나 組合組織의 여부에 對하여서는 分明하지 않다. 또 1871年에 内務省 傘下의 漁業關係機關은 協同組合漁業을 장려하였다는 記錄이 있는 것으로 보아 生產協同組合的 漁協이 이미 그 以前부터 設立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것 역시 그의 正確한 時期나 程度가 明確하지 않다. 다만 1890年에 美 最初의 獨占禁止法이 制定되어 去來制限의 獨占力を 行事하고 있었던 結社나 團體 등을 獨占禁止法에 의거 規制하기 始作하였을 때 農民團體들 보다 오히려 水產物 販賣組織이 더 많은 適用對象에 들어 있었다<sup>11)</sup>. 함으로 19世紀末 以時에 벌써 水協組織이나 漁民經濟團體의 活動이 활발해 있었던 것으로 推測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의 水產業協同組合的 團體는 美國協同組合法 成立의 史的過程을 고려하여 볼 때 水協 或은 漁協法이라고 하는 個別法에 의하여 成立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sup>12)</sup>.

水產業協同組合 設立의 根據法律이 처음으로 나온 것은 1934年이다. 水產物生產法(Aquatic Products Act. 1934)가 그것이며, 이 法에 의거하여 同年에 水產物販賣協同組合法(Cooperative Fisheries Marketing Act. 1934)이 制定됨으로써 現在 美國의 水協들이 誕生하게 되었다.<sup>13)</sup> 물론 이 以前에 組織된 水協團體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以前의 植民地 自治法, 1811年에 制定된 一般會社法 혹은 그 후에 成立된 非營利團體法 등에 根據를 두어 組織된 形態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sup>13)</sup>.

〈表. 14〉 美國의 州別 水協組織現況

州 別	組合數	組合數	組合當組合員數	州 別	組合數	組合員數	組合當組合員數
알 라 스 카	22	3,432	156	미 네 소 타	3	260	87
알 칸 사 스	2	156	78	뉴 우 저 자	3	112	37
칼 리 포 니 아	14	1,523	109	오 하 이 오	2	19	10
프 로 리 다	7	126	18	오 래 곤	2	121	60
루 이 지 아 나	3	106	35	로 드 아 일 랜 드	1	116	116
메 인	8	443	55	렉 사 스	1		
마 턴 랜 드	2	90	45	와 쟁 톤	11	3,466	315
마 사 쿠 세 츠	4	678	170	위 스 콘 신	1	9	9
미 시 간	1	16	16	計	87	10,672	123

11) Ewell P. Roy, op. cit., p. 254. 參조

12) Ibid., pp. 226~227.

13) Ibid., p. 140.

## 美國의 農・水協發達過程과 組織運營의 特徵에 관하여

따라서 前記 水產物販賣法은 美國水協關係法의 母法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로이」는 이것을 水產業의 Capper-Volstead法이라고 까지 말하고 있다<sup>14)</sup>. 이 法 이후로 「알라스카」「캘리포니아」「하와이」「루이지애나」「마린랜드」「오레곤」「버지니아」「와싱톤」 등 8개 州가 일제히 水產物販賣協同組合法을 採擇하였고 其他의 州들은 海產食品協同組合法을 採擇하여 水協을 組織하게 되었다.

이러한 過程에서 成立된 美國에 있어서 水產業協同組合現況은 다음 <表. 14>와 같다.

### 3. 水產業協同組合의 機能

農協의 機能別로 專門化되어 있는데 反하여 水協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組合이 諸般機能을 全般的으로 擔當하는 綜合協同組合形態를 取하고 있다.

大部分의 美國協同組合이 그러하듯이 水協도 적어도 組合固定資本의 50% 以上을 組合員이 負擔함으로써 設立이 가능하다. 組合은 組合員의 水產物販賣資金의 供給, 必要한 物資의 購買등 많은 經濟的인 事業은 물론, 漁民을 위한 社會福祉시설 漁船들의 團體保險加入, 福祉基金의 造成 및 水產業生產技術教育까지도 擔當하고 있다. 그러나 教育은 主로 委託方式을 取하고 있는데 漁業技術關係의 指導 및 教育은 水產試驗所나 大學의 水產關係研究所에 의뢰하며, 組合經營에 必要한 교육은 전국 協同組合研究所나 各 大學의 協同組合專門研究機關에 위탁하고 있다.<sup>15)</sup> 大部分의 水協은 漁民組合員을 위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生產的인 機能을 발휘하기 위하여 수산물의 揚陸施設, 저장창고, 냉동시설, 수산식품및 부산물 이용공장 등도 소유하고 있다.

例를 들어 「뉴우 잉그랜드」地方의 「포인드 쥬디시」漁民協同組合(Point Judith fishermen cooperative)은 約 150명의 組合員을 가지고 7명의 理事陣에 의하여 運營되고 있는 組合으로서 經濟 信用의 事業機能을 綜合的으로 發揮하고 있을 뿐 아니라, 1日 500ton 以上的 고기를 취급 할 수 있는 「필렛」공장과 「피쉬밀」시설을 비롯한 加工施設 및 New York 시장으로 魚類를 수송할 수 있는 「튜리」운반선등도 소유하고 있다.<sup>16)</sup>

이와 같이 美國의 수산업협동조합들은 비교적 小數의 조합원으로 조직되어 있지마는 경제, 신용, 사회복지 등 제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능의 발휘에 필요한 각종의 시설도 充分히 갖추고 있다.

### 4. 水產金融制度

漁民들에 必要한 각종 자금의 공급은 종래까지 商務省 漁業局→水協→漁民을 통하여 이

14) Ibid., p. 261.

15) 農林中央金庫, 世界の漁業協同組合, 1963, p.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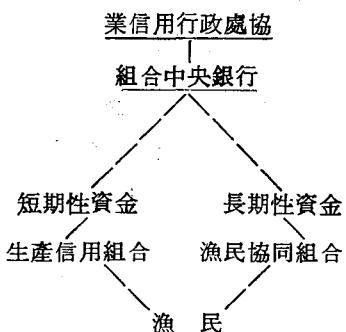
16) Federal Reserve Bank of Boston, Recent Development and Research in Fisheries Economics, New York, 1967, p. 121.

## 수 산 경 영 론 집

투워진 單一信用体系였던 것이 1971年の 農業信用法(Farm credit Act) 改正으로 季節의 需要의 短期性資金에 限해서는 生產信用組合(Production Credit Associations)을 통하도록 되어 있고 水協은 長期性信用만을 취급하는 水產金融의 二元体系를 이루고 있다. 여기서 長短期의 區別은 7年 以內와 그 以上으로 区分하고 있으며 長期의 限度는 43年까지다.<sup>17)</sup> 즉 水產金融은 2개의 地方組合을 底邊으로 하여 여기에 地域협동조합 은행을 中介로 하고 협동조합 중앙은행과 농업신용처를 정점으로 하는 조합금융 체계를 形成하고 있으며 이를 圖式化하면 다음과 같다.

資金의 種類는 漁船 및 機關의 購入, 建造漁船 및 修理資金, 防波堤建設資金, 冷凍冷臘 시설 및 運營資金, 추력등 運搬手續의 購入資金, 住宅建設資金, 生活資金, 漁業運營費 등으로

〈圖. 1〉 水產金融体系



多样하여 漁民들은 이들 資金中 어느 하나라도 借入코자 할 때에는 반드시 地方生產信用組合에 加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 生產組合은 漁民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直接金融機關이다.<sup>18)</sup>

以上과 같이 美國의 漁業現況과 水協의 成立 및 이에 관한 機能을 概觀하였으나 大体로 水協은 農協에 比하여 여러가지 問題에 있어서 協同組合의 機能의 發揮가 未弱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은 增加一路에 있는 水產物消費需要와 生產의 不均衡, 水產物輸出入의 慢性的인 赤字와 그 懸隔한 差異, 食糧資源問題에 따른 世界各國의 資源「내서너리즘」, 外國船舶의 過多操業으로 因한 沿岸遼河性魚類資源의 枯渴 등 諸問題에 대한 對策을 最近 比較的 심각하게 다룰려는 傾向에 있다.

食糧問題에 關聯하여서는 이미 지난 1967年 大統領科學諮詢委員會가 「世界의 食糧問題」라고 하는 龙大한 報告書를 통하여 食糧產業으로서의 水產業을 重要「아이템」으로 取扱하게 된 以後로 政策的 次元에서 이의 比重을 높이고 있으며<sup>19)</sup>, 漁業管轄權擴大를 위하여서는 지난 1973年 「제네바」國際海洋法會議が 내놓은 經濟水域 200mile案에 開發途上에 있는 많은 海洋漁業國들의 頗蹙을 사면서까지 同調한바 있다. 그리하여 1975年的 美議會에서도 앞으로 이 案을 固守할 것을 再闡明한바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보다 重要한 것은 1974年 美上院 「모그너선」議員이 漁業管轄權擴大, 沿岸漁民保

17) U. S. Government Manual, 1975/1976. p. 462.

18) Marine Fisheries Review, No. 942, p. 3.

19) "A report of the Presidents Science Advisory Committee", U. S. Government, May 1967, pp. 353~358. 參照

### 美國의 農·水協發達過程과 組織運營의 特徵에 관하여

護, 美沿岸에서 外國漁船과의 경쟁 배격 등을 目的으로 내놓은 「모그너선」 海洋漁業緊急法案이다.<sup>20)</sup> 이 法이 施行될 경우 美國沿岸에서 外國漁船의 漁撈活動은 매우 적극적인 규제를 받게 될 것이며 美國의 水產業은 지난 10년간의 滯滯期에서 벗어나게 될지도 모른다.

이와 같이 앞으로 美國의 漁業은 「國家의 基幹產業의 價值가 充分히 있는데도 不拘하고 他產業과 相衝된다하여 漁業의 犠牲쯤이야 無視되어도 좋을 정도로 水產業의 重要性이 國家政策的次元에서 否正되어 왔다.」<sup>21)</sup>고 말한 「홀름선」(Andreas A. Holmson)의概嘆과는 달리 새로운局面을 맞이할 政策的措置를 取하고 있다. 반면에 漁民의 組合金融利用窗口를 넓힘으로써 漁業信用擴大를 圖謀하기 위한 지난 1971年の農業信用法改正역시 美國水協의 販賣協同組合의 機能強化를 위한 組合育成의 한 制度的措置라 볼 수 있다.

#### IV. 農水協組織運營의 特徵

農·漁民을 위하여 組織된 協同組合을 保護하기 위한 特別法으로서의 農·水協法은 他法分野에서도 그러하겠지만 우리나라나 日本처럼 全國單位의 統一된 單獨立法形式을 취하고 있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각州마다 각각 獨自의 協同組合法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각급 협동조합마다 必要한 法律을 따로 채택하고 있다.

다음 <表. 15>은 美國의 각주가 채택하고 있는 協同組合法의 종류이며 어떤 法律은 연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다.

〈表. 15〉 각협동조합형태에 따른 주별 채택법을

州·聯邦 組合種類	州 法	聯邦法	探擇州數	州·聯邦 組合種類	州 法	聯邦法	探擇州數
농업거래협동합법	0			수산업협동조합법	0		8
농산물시장	〃	0	50	이 용 〃	0		28
인공부화	〃	0		근로자생산 〃	0		
농협은행	〃	0		연방토지은행 〃	0		
사업서비스	〃	0		신 용 〃	0	0	46
소비자	〃	0	38	상호보험 〃	0	0	50
축산물	〃			주택 〃	0	0	32
교육	〃	0		상호저축 〃	0	0	09
농업구매	〃	0					

20) 美上院 Mognuson議員이 提案한 法律로서 自國어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 해역과 어종에 관하여 미국의 관할권을 잡정적으로 擴大할 것을 目的으로 하는 이 法안은 관할권을 200 mile로 擴大하고 있으며 全文 12條로 구성되었다.

21) Andreas A. Holmson, the Economic of Small Trawler fleet, New York, 1967. p.1.

## 수 산 경 영 론 집

自然發生的任意團體였던協同組合이組合法에 의거하여設立에관한州政府의최초의承認을얻은것은19世紀末이다.더정확하게는1857年「뉴욕」주가農民相互火災保險協同組合設立에관한協同組合法을認可한이후이다.<sup>1)</sup>그뒤다른주에서도販賣,消費協同組合에관한法을制定하게되었다.이時期를個別法認許段階라한다.<sup>2)</sup>그러나1890年최초의獨占禁止法이公布됨으로써農協等協同組合은不法으로去來를制限하는「私的團體로規定되어活動에많은規制가加해졌다.즉이때까지協同組合은聯邦法下에서認定된合法的團體는못되고있었던것이다.이獨占法이2차례의修正을거쳐1922年에「相互利益을目的으로하는協同組合理念에입각한團體의事業活動은出資有限組織이면非出資無限organization이면相關치않고合法的인團體의activity으로본다」는「케이퍼볼스티드」(Capper-Volstead Act.1922)의修正法律이통과됨으로써비로소農水協은協同組合組織의正當性과그activity을보장받게되었던것이다.그리하여이法은農水協을獨占禁止法適用對象에서除外하는條件으로서다음사항을明示하였다.

①團體는生產者組合員의共同利益을위하여運營될것, ②運營은1人1票制의議決方式을取하고民主的일것, ③組合員에대한出資配當은年8%以內로제한할것, ④員外者의去來額은組合員去來額을超過하지않을것등4가지條件을要求하였다.<sup>3)</sup>이에그以後에組織되는農·水協은물론그以前의協同組合도이의條件을受諾하고組織과運營을새로이하였다.<sup>4)</sup>

이와같이美國의農·水協이「롯취엘」原則에입각한正當한協同組合의目的團體로처음부터出發하였음에도그것이非合法的인團體로規定되어마침내獨占法과의關係에서一旦問題가되었던것이다시이法에의해서그正當性을認定받았다는曲節이있었다는것은美國의農水協이여타諸國의그것과달리처음부터販賣事業을center으로하는大規模企業의事業組織으로成立發展하여온의基因하는것으로볼수있다.

다음은組合組織의特徵에관하여잠시살펴보면各國의協同組合發展過程에서取하는組合組織形態의樣相은大体로3가지形態로나누어볼수있는데,하나는거의大部分이單位組合center으로發展하는경우이며이경우에는單位組合의組合格인聯合體形成이거의없을뿐아니라上下의系統的關係를이루는系統組織은重要視하지않는것이一般的이다.다음은多數小規模組合이각각地方別또는職能別로聯合體를結成하는形態인데이경우는單位組合이그들의事業要求에의해서自發적으로組織되는것을말한다.마지막으로單位組合이地域別聯合會를組織하고이地域聯合會는다시全國聯合會내지中央

1) 大塚喜一郎著, 協同組合法の研究, 東京, 1964, p. 141.

2) 同上.

3) Ewell P. Roy, op. cit., pp. 215~216.

4) 大塚喜一郎著, 前掲書, p. 143.

美國의 農・水協發達過程과 組織運營의 特徵에 관하여

會를 組織하는 上・下 系統의 3段階組織形態를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는 單位組合 自体의 要求에 의해서 라기 보다는 組合組織을 利用하기 위한 政策的 requirement에서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다.

위의 形態中 前二者는 協同組合이 自發的發展過程을 거쳐 發達해 온 歐美諸國에서 자주 볼 수 있고 後者는 政策的 制度的要請에서 非自發的으로 組合이 組織된 亞細亞諸國에支配的인 組合組織形態라 할 수 있다.

美國의 農水協의 경우는 前二者에 屬하여 全國 統轄聯合會 같은 組織은 存在하지 않는다. 물론 전국 農業者協同組合協議會(National Council of Farmer Cooperatives), 美國協同組合會研究所(The American Institute of Cooperation, AIC), 美國協同組合聯盟(The Cooperative League of the U.S.A., CLUSA), 美國農業聯合會(American Farm Bureau Federation) 및 전국 農民連盟(National Farmers Union) 등 協同組合 關係의 全國組織이 없는 것은 아니나 이들은 單位協同組合 또는 單位組合의 聯合會에 對하여 上・下系統體系를 成立시 키는 統轄組織도 經濟的 事業組織體도 아니다. 이들은 主로 全國의 協同組合, 農漁民, 消費者를 위한 情報의 菲集, 資料의 分析 提供, 各種 利行物의 發刊, 教育 및 調査 研究, 組合經營의 諸問 등을 主業務로 하는 「서비스」機關에 지나지 않으며 때로는 價格 市場 生產 등에 關한 政策的인 問題를 政府에 提起하는 農政活動도 수행하기도 하나 그러나 本質的으로는 單位組合에 대한 「서비스」機關에 不過한 것이다.<sup>5)</sup>

〈表. 16〉 美國에 있어서 協同組合의 聯合會와 中央會의 比較

項 目	聯 合 會	中 央 會
1. 組 合 員	單位組合은 利用者이며 同時에 會員임	單位組合은 直接利用者에 불과함
2. 組 織 目 的	費用節減, 有利한 市場價格 유지	供給量을 통한 價格統制 機能發揮
3. 支 配 權	構成員인 單位組合이 가짐	中央會本部에 集中됨
4. 施 設 所 有 權	單位組合이 각자 自己施設을 所有하며 聯合會는 한낱 構成體에 불과함	中央會所有이며 혹은 中央會가 貸借함
5. 選 舉	單位組合이 直接投票함	各地區 代表가 中央會 代表를 選出
6. 事 業 種 目	構成員이 스스로 決定	中央會가 取扱品目을 選定
7. 價 格, 統 制	서비스強化로 販路開拓, 組合員活動助長	販賣 統制權을 가짐
8. 財 政 基 盤	出資를 원칙으로 함	非出資者도 認定하며 會費를 徵收함

資料 : Ewell p. Roy, Cooperatives, Illinois, 1964. pp. 32~303.

美國은 農漁民들이 他組合에 自由로히 加入함으로써 聯合組織에 代身하고 있으며 聯合體

5) 國會圖書館 立法調查部, 世界의 協同組合制度, pp. 127~131.

## 수 산 경 영 흔 칠

를 形成한다 하드라도 政策的目的에서 보다는組合員事業과 組合經營의 原價節減을 위하여 自發的으로 單位組合들이 參與하고 있는 것이 一般的이다. 이때 各 個別單位組合과 聯合體와의 關係는 하나의 利用者(Patrons) 또는 하나의 會員(Membership)일 뿐 從屬的 支配關係가 成立되는 것은 아니다.

「로이」는 美國에 있어서 協同組合의 聯合體(Federalized Cooperatives)와 中央會(Centralized Cooperatives)와를 앞의 <表. 16>과 같이 比較하면서 中央會는 特別한 目的에서 組織되고 非常設組織으로서 다음과 같은 理由로 하여 그 形成을 制限하고 있다고 한다. 즉, 「中  
央會組織은 一般的으로 獨立된 單位組合의 獨自性을 말살하고 真正한 組合運營이 밑으로 부터」(bottom-up) 일어나는 自然的인 現狀을 억제하며 모든 權限과 支配力を 司令部(中央會)에 集中하여 中央集權的形態를 取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므로 中央會組織에 대한 特別한 目的이나 要求가 있을 때 만이 가능하다고 하였다.<sup>6)</sup>

또한 美國에 있어서 單位組合이 設立되는 배는 組合組織의 必要性이 반드시 있는가 하는 「아이디어」의 導出에서 부터 州政府의 承認을 얻어 組合法人을 設立하기 까지 要하는 9段階의 意思決定過程을 거치는 동안에 生產者, 他組織의 指導者, 地域社會代表者, 農漁村開發機構, 農漁村青年集團 등을 構成員으로 하는 組織委員會로 하여금 組合의 運營方法과 自立的經營基盤關係를 면밀하게 調查 檢討한 다음에 設立을決定하고, 이를 承認하는 州政府 역시 이 문제에 대한 慎重한 檢討후에 認可하기 때문에 組合은 처음부터 自立原則下에서 外部의 依存을 배격하고 出發하는 것이다.<sup>7)</sup>

한편 美國의 政治社會制度는 各州의 獨立된 自治行政을 바탕으로 成立된 聯邦制이기 때문에 協同組合銀行 같은 政策的 目的의 組合聯合會 以外는 全州內의 協同組合이 統一的 系統体系를 形成할 수 있는 中央會組織은 制度의으로 어렵게 되 있다. 이와 같이 美國의 協同組合은 議會政治的 背景과 自發的인 發展과정을 거쳐 基盤을 確立하고 있으므로 橫的聯合은 있으나 從的系統組織은 갖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마지막으로 組合 内部 經營組織에 관한 特徵的一面을 찾어보면 Roy는 「協同組合이야 말로 真正한 共和國이므로 그것이 失敗하면 그와 더불어 民主主義 制度 自体도 失敗할 것이라」<sup>8)</sup>고 하여 協同組合經營에 있어서 組合員에 의한 民主主義的經營의 重要性을 強調하고 있다. 한편 「파-알버그」도 協同組合經營에 있어서 農民組合員의 意思決定 役割은 그들 農民들이 가진 「貴重한 財產」<sup>9)</sup>이라고 表現하고 있다.

이와 같이 協同組合經營에 있어서 民主主義的運營이란 매우 重要한 것이며 또한 그것이

6) Ewell P. Roy; op. cit., p. 296.

7) I bid.

8) Ibid., p. 48

9) News for Farmer Cooperatives, April 1970, p.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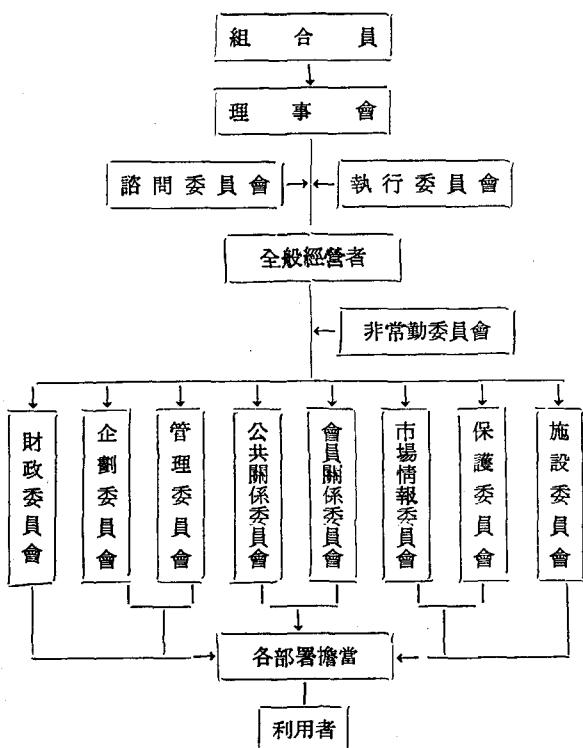
### 美國의 農・水協發達過程과 組織運營의 特徵에 관하여

缺如되었을 경우 가장重大한組合運營의失敗를超來한다는것은 말할必要도없다. 왜냐하면協同組合의民主主義的運營은 바로 그것이3世紀間協同組合自身을支撑시켜온本質일뿐아니라協同組合과 다른組織体와를區別짓는特徵의「머릿드」가되기 때문이다. 이것은組合員의公開原則,一人一票主義라는方式으로体现되어 어느나라의協同組合에도共通되는大前提가되고있다. 물론美國의協同組合法에도協同組合은「組合員에의하여設立되고經營될것을要하며」,「組合의所有와經營은組合員에게實質적으로平等할뿐아니라」,「利益의公平한分配」를엄격하게規定하고있다.<sup>10)</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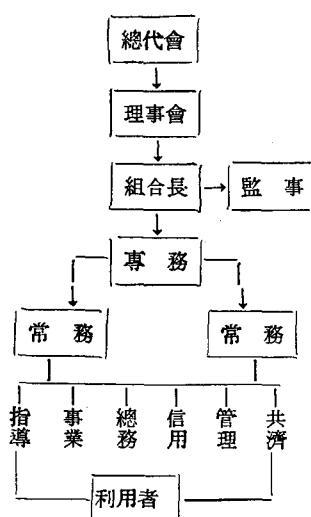
그러나보다個人主義가強하고組合規模가大規模企業의으로運營되고있으면서도다른諸國의그것과比較하여民主的經營의特質이일층부각되는것은組合經營組織의採擇에서이다. 다음〈圖.2〉의美國單位組合의經營組織가운데가장많이採用하고있는組織을보면理事會와全般經營者사이에2개의委員會를두고있고各部署도組合員을包吟한委員會組織下에事業과業務가執行되고있는委員會組織이다. 여러가지經營組織形態中가장典型的인民主化로代表되는組織을美國은採擇하고있다.

〈圖.2〉

美國의協同組合經營組織



〈圖.3〉韓國의漁協經營組織



10) 大塚喜一郎著. 前掲書, p. 149.

## 수 산 경 영 론 집

그의 이組織을 擇하지 않는 다른 專門農協 및 州單位 協同組合들도 大部分이 理事會와 經營管理責任者の 組合運營方針決定에 助言과 諮問機關으로서 役割할 수 있는 組合員을 包含한 行政委員會, 信用委員會, 經營諮詢委員會, 그 밖에 經濟 經營 會計學者로 構成되는 여러 形態의 委員會를 두어 組合를 運營하고 있다. 即 經營組織에 있어서 委員會制度(Committee system)가 바로 그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組织이 組合經營에 있어서 時間과 努力의 浪費를 超來하고 신속하게 諸般業務를 處理하지 못한다는 非能率性의 缺点이 없는 것은 아니나 協同組合經營이라는 特殊性을 감안하여 볼 때 組合과 組合員關係의 改善과 密着, 組合運營의 理解度提高, 새로운 認識의 부여에 있어서 바람직한 組合經營組織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圖. 3>의 우리나라 協同組合經營組織과 比較하여 많은 差異가 있다. 우리나라의 그것을 傳統的 管理中心의 官僚化組織이라 한다면 美國의 이러한 協同組合들이 取하고 있는 形態는 「콤뮤니케이션」과 協同的 意思를 創出할 수 있는 近代組織論의 民主化形態라 하여야 할것이다.

## 結 言

이로서 지금까지 農水協을 中心으로 한 美國協同組合의 發達過程과 그 現況 및 特徵을概觀해 보았지만 이제까지의 考察內容을 다시 綜合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美國 최초의 協同組合은 1752年 農村相互保險協同組合에서 出發하였으나 近代的 協同組合의 成立은 19世紀(1860年 以後) 以後이다. 特히 1867년의 「그레인즈」운동이라고 하는 이른바 資本主義 發達과정에서 야기되는 資本家와 非資本家, 都市와 農村과의 關係에서 발생되는 農民運動의 한 형태가 自發的인 近代協同組合 運動으로 昇華되었다.

2) 近代 協同組合成立期부터 販賣協同組合 中心으로 發展하여 왔으며 農產物市場機能에서 組織力確保를 위하여 大單位로 組織되었다. 西部開拓으로 얻은 廣大한 農土는 小作制度라는 農業資本主義發展에 框梏이 되었던 半封建的 제도의 制約 없이 처음부터 美國農業은 商業的 大農의 基盤위에서 出發하였으며, 그것은 農業機械化를 促進시켜 大量生產을 가능케 하였던 것이므로 農產物의 販賣는 가장 基本的인 問題였던 것이다. 이에 農協의 發達은 必然的으로 販賣事業을 中心으로 전개되지 않을 수 없었다.

3) 協同組合의 種類가 多樣하고 機能別 品目別로 組織되어 行政單位나 地方組織보다는 專門分野別 協同組合으로 發達해 있는것이 특징이다. 이와 같은 것은 組合運動이 自然發生的 發展 과정을 거친 사회에서는 一般的의 現象이다.

4) 水產業協同組合의 歷史는 짧으며 成立이 다른 組合들에 比해 늦었다. 이것은 美國에

### 美國의 農·水協發達過程과 組織運營의 特徵에 관하여

있어서 水產業의 產業의 發達이 늦었다는 것과 水產業構造가 比較的 中小型 船舶에 의존하는 沿近海漁業을 中心으로 이루워지고 있다는 것을 示唆하는 것이다.

5) 組合運營은 組合員과의 「콤뮤니케이션」을 重視하고 있으며 經營組織의 採擇이 민주적이다.

6) 組合制度는 獨占規制法과의 關係에서 確立되었으며 系統的 段階的 組合制度가 아닌 橫的 組織을 取하고 있는 점이다.

以上 몇 가지 간단하게 結論을 要約 하였는 바 協同組合運動이 團體活動을 生活化하고 있는 美國社會에 있어서는 보다 쉽게 그리고 빨리 成立될 수 있는 主体的 要件이 갖추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植民地支配 階級과 抗拒한 獨立以前의 수많은 自治組織, 그리고 기타 團體들은 近代的 協同組合成立에 있어서 큰 役割을 하지 못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結局 18世紀 美國 資本主義初期에 자주 일어난 農民友愛團體의 發生 과정을 거쳐 19世紀의 美國 產業資本主義 確立期에 나타난 大大的 農民運動에 의하여 비로소 近代的 協同組合이 成立 發展할 수 있었다는 것은 역시 協同組合運動이 成立되기 위하여서는 어느 社會를 莫論하고 그것의 自生的 胚胎와 發現契機가 주어지는 客觀的條件으로서 資本主義經濟의 成立과 發達이 前提가 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確信케 한다. (釜山水產大學 水產經營學科)